

contents

1.	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3	
	2. 이력제 개념	
	3. 도입 배경 4	
	4. 용어 정의 5	
	5. 국내외 주요 사례	
	6. 기대효과	
\mathbb{I} .	이력제 추진 현황	
	1. 이력제 추진 경과	
	2. 이력제 추진 체계 17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20	
Π .	세부업무 매뉴얼	
	1. 도축단계 ····· 23	
	2. 포장처리단계 29	
	3. 판매단계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5. DNA동일성검사 ····· 49	
	6.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53	



contents

IV.	단계별 전산매뉴얼	
1.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통)	. 6
2.	포장처리단계	66
3.	판매단계	94
V.	이력단계별 질의응답	
1.	도축단계	111
		121
3.	판매단계	131
4.	DNA동일성검사 ·····	137
5.	위반자 처분	142
6.	기타사례	143
VI.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7
2.	시행령 별표	204
3.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207
4.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262
5.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287



- 1. 이력제 정의
- 2. 이력제 개념
- 3. 도입 배경
- 4. 용어 정의
- 5. 국내외 주요 사례
- 6. 기대효과



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 □ 이력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법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식품법: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 이력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2. 이력제 개념

-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포장처리·유통과정의 각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 시키는 제도
-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 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포장처리,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대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이력번호 확인을 위해 도축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



3. 도입 배경

-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 하여 쇠고기이력제 도입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
-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 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4. 용어 정의

□ 축산물이력제 ○ 소, 돼지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이력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 및 돼지와 돼지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
□ 개체식별번호 ○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
□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소·돼지)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투장관이 가축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이력번호 ○ 도축 이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식별을 위해 도축이후 단계에서 국가기 부여하는 15자리 식별번호로서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서 표시하는 번호
□ 이력관리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
□ 귀표 등 ○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테그(RFID-tag)를 포함한다)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 재부착용 귀표

○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시 당해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

□ 위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소의 경우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귀표 부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지역 농·축협 등을 말하며 종돈의 경우 종축개량협회를 말함

□ 농장경영자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

□ 가축거래상인

○ 소·돼지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 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묶음번호

○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묶어 포장 판매할 경우 부분육(포장육 포함)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수 있는 번호

□ 도축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일련의 생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대형업체

□ 축산물도매시장

○ 도축 후 생산된 도체(부분육)를 경매·입찰 방법으로 위탁·판매하는 업체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이 운영

□ 축산물공판장

○ 생산자단체(농협·축협 등)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 성격의 사업장, 출하한 축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아 도축하여 판매 후 대금 정산 등 전 과정을 대행함, 수탁사업과 위탁받은 축산물을 운영주체의 자체 자금으로 매입·판매하는 사업을 동시에 수행

□ 일반도축장

○ 개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도축산업시설을 개설·운영하는 시설로 업종은 축산물을 다루는 시설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업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식육판매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의거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자

□ 위해축산물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6항에 의거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위해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 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 용어정의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의함.



5. 국내외 주요 사례

가. 유	일본
	소 개체식별제도 구축을 위해 2004년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한다는 계획 하에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03.6)하여 리고기이력제 도입
	5가의 출생·이동 및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도축이후 가공· 판매·음식점 등 유통단계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
나. E	≣U
	가축방역 및 축산장려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2년부터 행정지침에 의거 가축의 보유상태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92/102/EEC)
□ '9	97년 소의 개체식별제도 도입, 98.1부터 시행
	(EU Council Regulation No 820/97) 개별 소마다 패스포트를 부여하여 질병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동시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

다. 호주

Traceability 적용 의무화

□ 1999년 EU 요구에 따라 국가가축개체식별체계(NLIS) DB구축, EU 수출용 소에 우선 적용(Victoria주)

□ 2005. 1월부터「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 2004년 NLIS를 Traceability사업의 표준으로 결정하고, 모든 주에서 귀표 부착 의무화

라. 미국

□ 2003년 12월 US. Animal Identification Plan(USAIP) 발표하여 2004년 7월까지 모든 주에서 농장식별체계를 갖추도록 추진

□ 2005년 5월 USDA 전략계획을 발표

<주요국 쇠고기이력제 추진현황 비교표>

구분		일본	프랑스	호주	한국
실시근거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03. 6)	`97년 EC/820/ 97세정 `00년 EC/1760/ 2000발표	주별 축산공사법 ('98, NSW)	소 및 쇠고기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07.12.21. 제정·공포)
시작	생산 단계	`03.12	'98	,99	`08.12.22.
연도	유통 단계	`04.12	'00	_	`09. 6.22.
	농가 부담	없음 (정부지원)	귀표구입 및 장착비	귀표구입 및 장착비	없음 (정부지원)
	귀표 부착	농가 (농협 등 지원)	농가	농가	위탁기관 (농협 등)
	신고 방법	FAX, 전화, WEB, 메일 등	FAX, 전화, 우편	RFID체계에 의한 인터넷 신고	FAX, 서면, 전화 등
추진 체계	이력정보 입력	가축개량센터	Department(현) EDE(축산식별 관리사무소)	농가, 도축장, 가축시장 각 담당자	위탁기관 (농협 등)
	전산정보 내용	개체식별번호, 소의 품종· 출생일·성별· 사육지 등	개체식별번호, 소의 품종·출생일 ·성별·사육농장 등	개체식별번호, 사육농가, NVD(출하증명서) 발급번호 등	개체식별번호, 소의 품종· 출생일·성별·사육 농가 등
	국가 DB 관리	가축개량센터	농업식량부 동물건강과 식품안전국	MLA (호주축산공사)	농식품부
소비자 정보제공		인터넷, 휴대폰, 전화	없음	인터넷	인터넷, 스마트폰, 휴대폰(6626)
DNA동일성검사		전체 도축두수의 1%(가축개량기술 연구소)	-	수출용 브랜드 등 일부 자율실시 (Genetic Solution사)	전체 도축두수의 1.5% (품질평가원)
지도·감독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농림부, 경제재정부	제1차산업부	농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6. 기대효과

-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 가축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이력대상축산물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비자가 조회하는 경우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농장경영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
-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정보 활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가능 해져 소비자에 대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
-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 개량과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경우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이력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



- 1. 이력제 추진 경과
- 2. 이력제 추진 체계
-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이력제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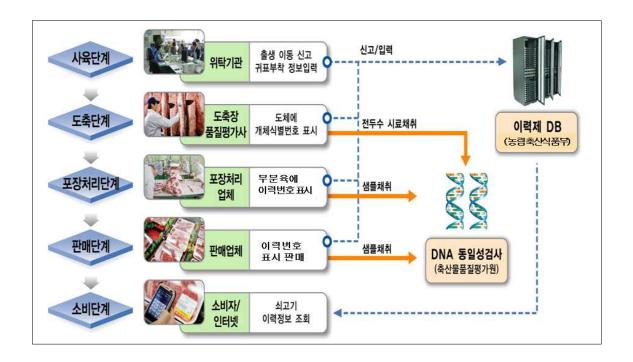
1. 이력제 추진 경과

- □ '04.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 보완
- '04. :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시범사업 실시
 - 홈페이지 구축, 도축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대상 사육두수 : 40천두)
- '05. : 14개 브랜드 경영체 참여 및 DNA 동일성검사 실시
 - DNA 동일성검사 전문 인력 채용(3명) 및 실험실 확보
 - 도축장 13, 포장처리업소 13, 판매장 30개소 연계(대상 사육두수 : 59천두)
- '06. : 20개 브랜드경영체와 3개 시·군 참여
 - 도축장 21, 포장처리업소 24, 판매장 93개소(대상 사육두수 : 214천두)
- '07. : 경기도, 25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 등에서 참여
 - 도축장 39. 포장처리업소 32. 판매장 178개소(대상 사육두수 : 730천두)
- □ '07.12.21.「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 '08.12.22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09. 6.22부터 법 적용
- □ '08년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시행
- '08.12.22부터 소의 출생·이동 신고 및 귀표부착 등 사육단계 적용
- □ '09.06.22. 쇠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 소의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

□ `10.05.25.「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 `10.12.22부터 이 법의 제명을「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 시행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0.12.22.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10.12.22일부터 통관에서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1.06.22.부터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 출생 등 신고기한: 5일 이내, 육우 귀표부착 기한: 7일 이내
□ `11.12.22.부터 의무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범위 확대(종업원수 5명 이상)
□ `13.12.27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돼지고기를 포함하면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공포
□ `14.12.28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15.6.28일 포장처리·거래내역 전산신고 유통단계 전면시행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의
포장처리 거래(매입·매출)실적 이력시스템에 신고



2. 이력제 추진 체계



① 사육단계

-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육우는 7일) 이내 귀표 부착
 - 단,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 및 방목사육지는 90일(육우포함)

② 가축시장

- □ 거래내역 신고
-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가축시장개설자는 가축의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신고

③ 도축단계

-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이력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 시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
- 검사관은 위생검사 합격여부,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④ 포장처리단계

-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5일 이내)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의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5일 이내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2년)

⑤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해당 소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이력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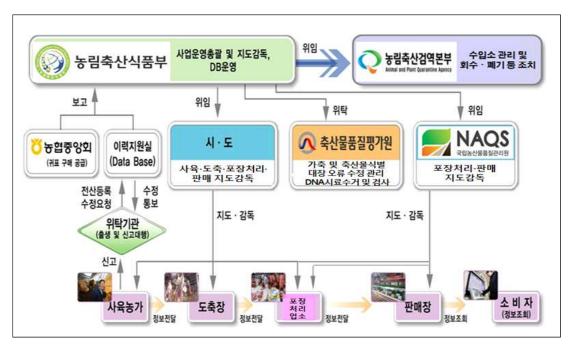
⑥ 소비단계

- □ 소비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안심장보기, 축산물이력제),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1. 기관별 추진체계



2.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운영 총괄 및 지도 감독		
시·도지사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질병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 포장처리·판매단계의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시스템 DB운영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DNA동일성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등	
위탁기관	■소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귀표의 부착 지원	



- 1. 도축단계
- 2. 포장처리단계
- 3. 판매단계
-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 5. DNA동일성검사
- 6.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세부업무 매뉴얼



1. 도축단계

1. 도축신고(도축출하신고 포함)

- 농장경영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각각 제출
 - 농장경영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 의뢰시 농가명(최종 소유자 등), 생년월일,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업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 부착,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여부, 소유자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전산입력
-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 도축업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도축 처리 결과를 신고
 -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 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 관리시스템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 하고.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역을 신고

○ 신고기한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

○ 도축단계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_n -n -n -n -n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지원실로 연락하여 개체식별번호(농장식별번호
1.	개체식별	포함)의 재부여 등의 조치사항을 도축업자에게 통보한다. 도축업자는 발급받은
	번호의	개체식별번호를 <표1호>의 서식에 따라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	발급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
		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
		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
		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n	개체식별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۷.	–	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번호의	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해야 하며 다시
	관리 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그 밖에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방법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연락하여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 후 재부여 등의 조치사항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관할위탁기관에서는 해당개체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 도축업자는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장에 날짜별로 기재하고 관리
 - 도축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 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거 이력시스템으로 입력 된 경우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 한 것으로 갈음
-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 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丑1〉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도축장

								`	7 = 10
가축의 연월일 종류 (소, 돼지)		암수 구분 (돼지는 마리수)	신청인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재발급	축산물품 질평가사
	(소, 돼지)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기존	재발급	사유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도축이 완료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후 해당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전자분석팀로 이송

〈丑2〉

<도축단계업무 흐름>

어 변	무흐름	조 치 사 항
① 도축신청 접수	도축검사신원 서	○ '도축검사신청서'접수
② 개체식별 번호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③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 치여부 확인 후 도축○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④ 라벨출력 및 부착	The state of the s	○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⑤ DNA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개체 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이송
⑥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2. 포장처리단계

1. 포장처리 거래실적 전산신고

가. 신고대상(국내산 쇠고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 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11.12.22.부터 적용)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나. 신고기한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 쇠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용어의 정의>

- 판매(販賣) :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반출(搬出): 도축장이나 포장처리업소 등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다른 포장처리 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
- 매입(買入) : 도축장 혹은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구입 등의 방법으로 사들이는 경우
- 반입(搬入)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한 후 해당지육이나 부분육이 가공 되어 다시 들어오는 경우

다.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및 취소

-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자 등은 <표3>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국내산이력축산물 포장처리업소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업체의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신신고 의무대상에 대한 조건을 상실하여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표4〉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라. 신고내용

-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인 업소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경우<표5>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제출
- 포장처리업소 간 거래 혹은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쇠고기를 판매 및 반출 혹은 도축장으로 부터의 매입 및 반입(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을 하는 경우 〈표6〉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처리 할 때에는 〈표5〉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로 기록·관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7〉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으로 기록·관리(단,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즉 반입의 경우 <표5>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의 의뢰업체명에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바. 포장처리 방법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자가 쇠고기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포장처리
-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되는 이력번호가 재포장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처리

사.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포장처리를 의뢰한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출고신고 → ③ 입고신고 → ④ 출고신고

③ (생략가능)

<포장처리를 의뢰받은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포장처리실적신고 (의뢰업체명 신고) → ③ 출고신고

① (생략가능) ③ (생략가능)

〈丑3〉

	처리기간								
	3일								
	①업체명		② 점포명 ※해당업체만 기재						
신청인	③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④허가신고필증 번호	0000000-000-0000-0000					
	⑤소재지		<u>v</u> :)						
	⑥대표자 성 명	(인)	⑦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000000-0000000					
	8영업장면적	m²	⑩전화번호						
	⑨종업원수	명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	영업허가·신고필 사업자등록증 사	– .	(별첨)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표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문의 : 1577-2633

팩스: 044-410-7178

〈丑4〉

	처리기간								
	30일								
	①업체명				②점포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허가·신고필증 번호				
신청인	⑤소재지					(우편번	_ই:)		
	⑥대표자 성 명			(인)	⑦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⑧영업장면적	m²	⑨종업 원수	명	⑩전화번호				
취소 시	취소 사유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丑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5	매입·반입	5 -]	(⑤ 의뢰업체명	3
		(A) =		(3)		^	1		5
① 포장 처리일	② 이력 (묶음)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 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년

〈丑6〉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 이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1						
	성명(법인명])			대표자		
الم حداد	생년월일(시	l업자 또는 '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신고인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3-1 0)-1	영업장의 명	령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출고・입고)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대표자		
⇒] ¬]] ⇒]	생년월일(시	l업자 또는 i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처	영업허가(신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거래일		도축일		가공	일	
거래내역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 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거래일 (연월일)	도축일 (연월일)	가공일 (연월일)	이력 번호	도축 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 (BOX, 마리)	(뒤쪽) 무게 (kg, t)
	(L E L /	(L E L)			1 11 0	(2.512)	(128, 0)
						<u> </u>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BOX 또는 도체 지육의 경우마리)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丑7〉

엄체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저하버ㅎ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д ч о			C-1 C-			
소재지						
① 판매일·	2	③ 원료 또는	④ 판매량	(5) 판매처·반출>	से
반출일	이력(묶음)번호	부위명	(kg, t, 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1.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2. 이력번호 관리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식육포	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사·식육판매업사가 이덕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부의 기록 방법

- 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 기록내용
 - 시행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표5>에 의한 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 포장처리 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표7>에 의한 판매·반출실적을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
- 장부의 비치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 부터 2년간 보관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 시행령으로 지정 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자체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3.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

〈표8〉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Ó	무흐름	조 치 사 항
①포장처리업소 입 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② 발골•정형		○ 포장처리업소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③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를 포장지에 부착 - 최소포장단위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④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지를 겉포장지에 부착
⑤출 고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3. 판매단계

1. 이력번호 표시 및 방법

가. 표시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

나. 표시방법 및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 번호를 표시 하여야 함. 다만 이력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단,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함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력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
- 거래·판매 후 남은 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
- 비닐 등으로 포장된 식육에 대해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거래(전산)신고 대상 및 절차

가, 전신신고(의무)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종업원 5인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이상인 식육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연접 및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로써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해당함

- 전산신고대상자 및 이력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관리 하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표3〉의 이력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나. 신고절차 : 거래신고 대상자는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
- 신고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매입, 매출) 등
 -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 (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 다. 신고기한 :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3. 거래명세서 관리

-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 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표13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함

4. 이력번호에 따른 정보 제공

-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농장식별번호, 2. 소,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등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암수 구분 7.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명), 8. 사육시설의 소재지,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11.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력관리대상가축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5. 장부의 기록방법

-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묶음번호)의 추적이 용이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표9>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다만 전산신고 업체는 전산신고 입력내용을 거래내역서로 갈음
- 식육판매업자가 이력관리쇠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이력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서확인서 사본을 교부
-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축산물 위생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으로 입력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班9>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거 래 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묶음번호)	매입처

6.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

〈표10〉

판매단계 업무흐름

Q.	무흐름	조치사항
① 판매장 입고	및 BURNET HE PROPERTY OF THE P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관리
② 부분육의 소분할		○ 이력번호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③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 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 이력번호를 라벨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 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 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이력정보 공개	427 09 34 - 100 -	○ 인터넷, 스마트폰 앱, 핸드폰(6626),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공개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 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 묶음번호는 로트(Lot)번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 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함.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
- 영 제4조에 따른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 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 신고

3. 묶음번호 구성체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 가.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 나.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 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 로 표기한다.
- 다.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 라.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2)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서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 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丑1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유의사항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5. DNA동일성검사

1. 검사추진체계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쇠고기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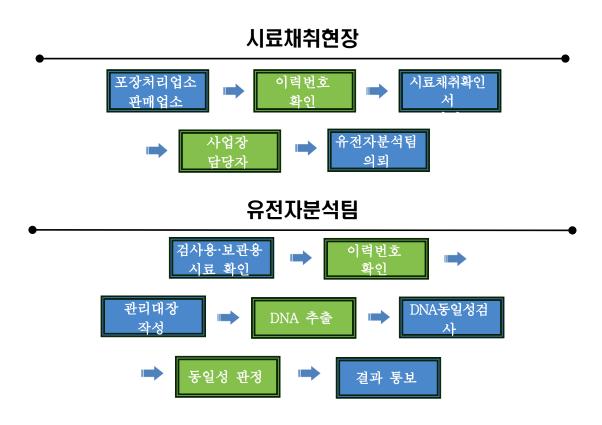
나. 시행기관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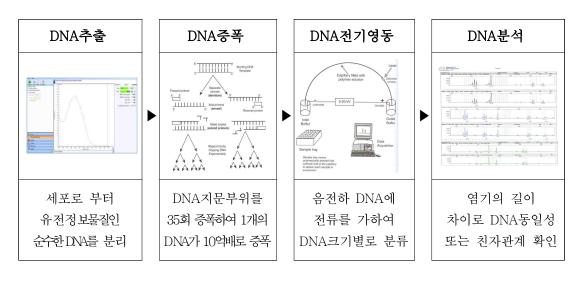
다. 지도·단속 권한

- 지도·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 시·도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업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포함)
 - 사육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표본검사)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도축 전두수 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파매단계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라. DNA동일성검사 체계



마. DNA동일성검사 방법



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방법

	업무흐름	추진요령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cm×10cm)에 밀봉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담당자간 서명날인	National and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검사용 지정봉투의 추가봉인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cm×30cm)에 넣음
유전자분석팀 송부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팀)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에서 이력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팀)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다. 시료채취 및 우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판정불능으로 날 수 있음
 - 사용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봉투 작성은 볼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6.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가. 위해축산물의 범위

○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축산물 중 국내산 쇠고기 및 수입 쇠고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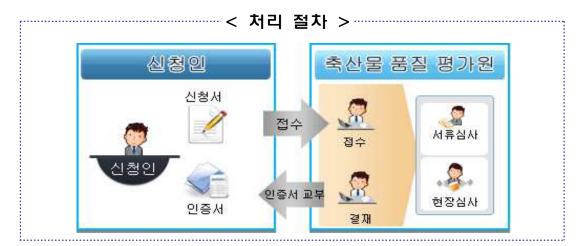
나. 인증신청 대상

-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중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거래신고(전산신고)가 가능한 판매업소
 -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위해축산물을 차단 및 확인할 수 있는 단말장치(화면 출력 혹은 인쇄출력물 등)를 갖추어야 함(ERP 시스템 등)
- 최근 6개월간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관리팀)

○ 처리기간 : 20일



라. 제출서류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신청서 1부<표13호>
 - ② 영업신고필증(허가증)사본 1부
 - ③ 최근 2개월간 거래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1부

마. 인증심사 내용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 일자별로 구분하여 기록·보관 및 거래신고하고 있는가?
-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가?
- 식육의 판매표지판이나 비닐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가?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가?

······· < 인즁취소 대상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 나 허위로 신고 또는 기록한 경우
- 4.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5. 인증 유효기간 내에 동 법과 관련된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6. 동 법에서 정한 표시광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바. 인증서 발급

○ 인증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해축산물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표14호>

사. 인증업체 특례

-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고·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력법 제29조 4항)
- 영업장 출입구 등에 인증 받은 영업장임을 표시한 간판 부착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 받은 영업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아. 인증갱신

○ 인증유효기간(1년)이 끝나는 30일전까지 인증 갱신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丑1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즁 신청서										
	인증품목									
	①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		·번호						
신 청	③주 소									
	④영업장명칭	⑤허가증 · 신고		신고필증번						
	(상호)		ই							
	⑥소재지	(전화번호 :			ı					
	⑦영업의 종류	□ 축산물수입판매업 □		□ 식육] 식육포장처리업					
인		□ 식육판매업		□ 식육	□ 식육부산물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⑧판매차단시스									
	템 내역									
	⑨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J 12/0/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 규정에 의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영업장 지정을										
	⑩ □ 신규, □	변경, □ 갱신	신청합니다	7.						
년 월 일										
							또는 또는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뒤쪽의 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없음										
1. 영업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2. 최근 2개월간의 국내산이력축산물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서 1부(전자 문 서를 포함한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丑13〉

(앞 쪽)

제 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서

- 1. 인증품목 :
- 2. 영업장의 명칭(상호):
- 3. 허가 · 신고필증번호 :
- 4. 대표자 :
- 5. 사업자등록번호 :
- 6. 소 재 지 :
- 7. 영업의 종류 :
- 8. 유효기간 :
- 9.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내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 규정에 의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귀 녹)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통)
- 2. 포장처리단계
- 3. 판매단계



단계별 전산매뉴얼



1.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통)

1. 회원가입(포장처리단계 및 판매단계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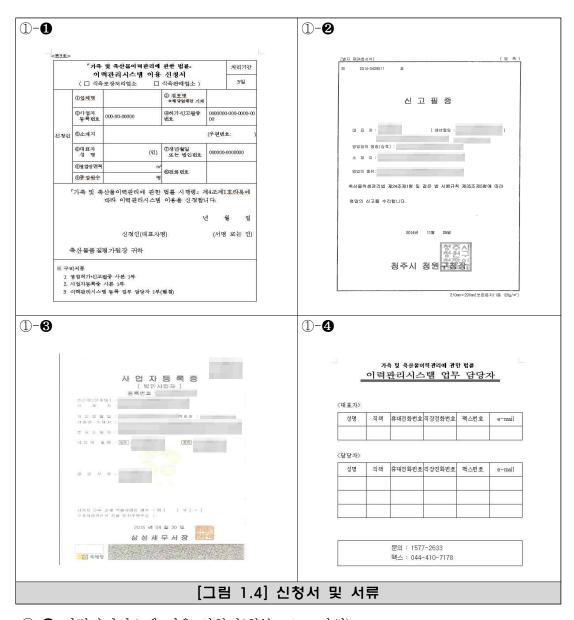
-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 http://www.mtrace.go.kr/
- ② 고객지원실을 클릭



- ① '자료실'을 클릭
- ② 196번 '[2015년]식육포장·판매업소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클릭



- ① 첨부파일 클릭
- ② 저장 클릭
- ③ '포장_판매장 신청 양식'을 '내컴퓨터'에 저장하고 압축을 풀어줌
- ④ 첨부파일 중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와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서류를 작성



- ① ①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첨부: hwp파일)
 - 2 신고필증(판매장), 영업허가증(포장처리업소)
 - **3** 사업자등록증
 - ◆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첨부 : hwp파일) 4장의 서류를 이력지원실 팩스 044-410-7178로 전송
- ② 이력지원실에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SMS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http://www.mtrace.go.kr/
- ② [로그인]버튼 클릭 (*** 로**그인 →소, *** ⑥ 로**그인→ 돼지)



- ① 이력지원실에서 발급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 ② 로그인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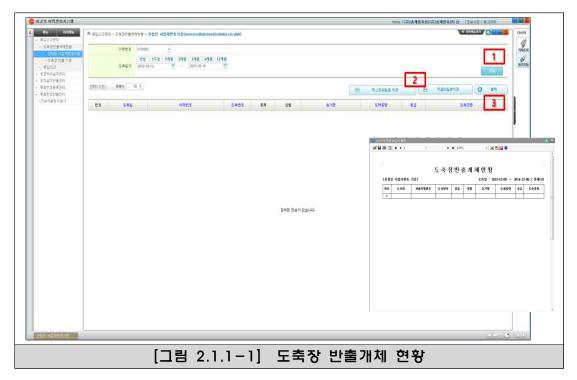


2. 포장처리단계

2.1 매입신고관리

2.1.1 도축장 반출개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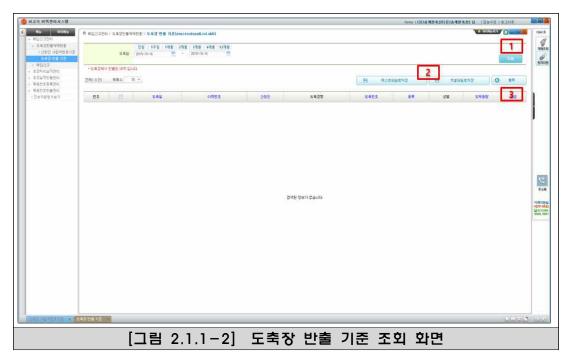
- (1) 신청인 사업자번호기준
 - 개요 : 신청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도축장반출개체현황 > 신청인 사업자번호기준
 - 화면 설명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조회 결과를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 ③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음

(2) 도축장 반출기준

- 개요 : 도축장 반출을 기준으로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도축장반출개체현황 > 도축장 반출 기준
- 화면 설명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조회 결과를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 ③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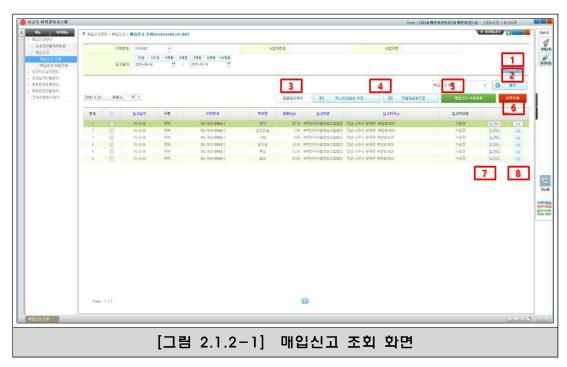
2.1.2 매입신고

(1) 매입신고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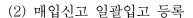
■ 개요: 매입실적신고를 조회하거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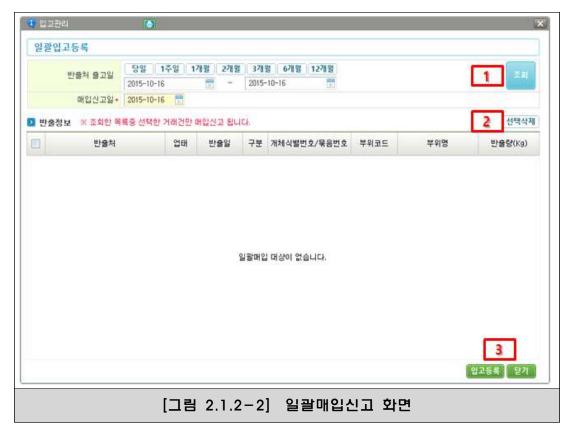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조회

■ 화면 설명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매입신고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음
- ③ 로그인한 업체로 반출된 거래내역을 일괄 매입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④ 매입신고된 목록을 엑셀이나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음
- ⑤ 매입신고를 한 건씩 수동 등록할 수 있음 *(3)매입신고 수동등록에서 상세설명
- ⑥ 조회된 거래내역 중 선택된 매입신고 건을 삭제
- ⑦ 조회된 거래내역 중 해당 매입신고를 삭제
- ⑧ 조회된 거래내역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이동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거래 상대방에서 반출하였으나 매입신고 되지 않은 거래가 조회됨)
- ② 조회 대상 중 선택한 거래를 목록에서 삭제
- ③ 조회된 거래내역중 선택된 거래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등록

(3) 매입신고 입고내역 수정



- ① 수정대상 매입신고건의 내용을 수정 (현재 매입 무게만 수정가능하게 되어 있음)
- (4) 입고 수동 등록



- ① 수동입고 대상 내용을 검색
- ② 부위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한 쇠고기 부위를 등록할 수 있음
- ③ 추가한 부위코드 중 선택한 부위를 삭제
- ④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신고
 - ※ 기존 한부위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개체식별번호별 여러 부위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한 부위 개수만큼 매입건이 생성됨

2.1.3 매입신고 파일전송

■ 개요 : 매입신고를 파일로 전송하여 등록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 파일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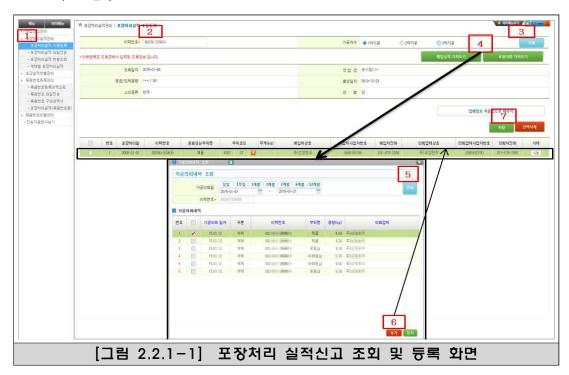
- ① 등록할 파일을 검색하여 읽어 들입니다. 파일을 읽어들일때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정보를 표시
- ② 파일에 오류가 없을때 활성화 되며 해당파일의 내용으로 매입신고
- ③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부분만 화면의 목록에 나타남

2.2 포장처리 실적관리

2.2.1 포장처리 실적 수동등록

■ 개요 : 포장처리실적을 수동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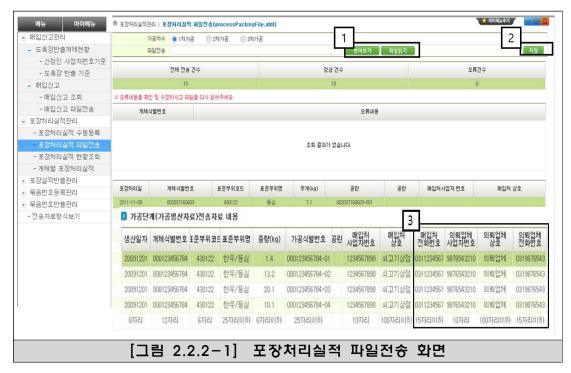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항목을 클릭
- ② 포장처리신고 할 이력번호를 입력
- ③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도축여부 및 해당개체의 기존 포장처리실적을 조회
- ④ 매입한 개체에 대한 포장은 '매입실적 가져오기'버튼을, 포장처리의뢰를 받은 개체에 대한 포장은 '포장의뢰 가져오기'버튼을 통해 해당개체를 조회
- ⑤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또는 포장의뢰 내역을 조회
- 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포장할 개체정보를 추가
- (7)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 포장실적을 저장

2.2.2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 개요 : 포장처리실적 신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업체 업무시스템(ERP 등)의 포장 처리 정보를 일정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이 파일을 이력시스템에 등록 하여 신고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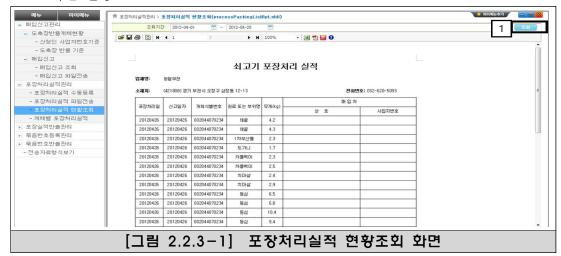
- ① 가공차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읽기 버튼을 클릭
- ②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전체 전송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 이력번호별 오류내용과 파일정보를 조회하여 저장
- ③ 매입처 전화번호정보와 의뢰업체정보를 추가로 입력 받을 수 있음

2.2.3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 개요 : 포장처리실적의 현황을 조회한 후 출력

■ 메뉴 접근경로: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 포장처리실적현황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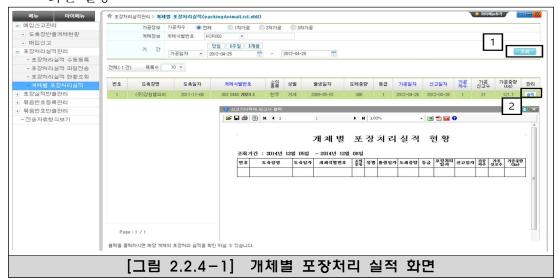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 정보가 조회되어 리포트로 출력

2.2.4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 개요 :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을 조회하고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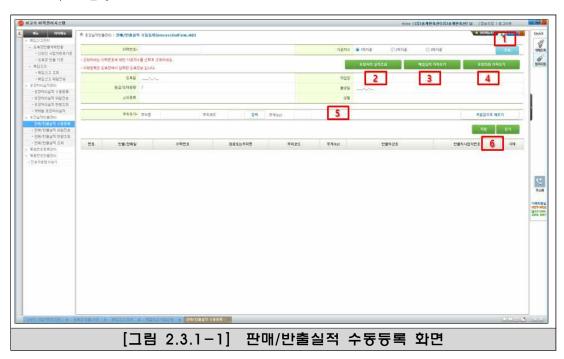
- ①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조회
- ② 각 현황을 리포트로 출력

2.3 포장실적 반출관리

2.3.1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건별로 수동 등록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수동등록



- ① 이력번호를 입력한 후 도축장에서 입력된 도축정보와 판매실적정보를 조회
- ② 이력번호의 포장처리 실적 조회화면을 호출
- ③ 이력번호의 매입신고 내역 조회화면을 호출
- ④ 이력번호의 가공의뢰 내역 조회화면을 호출
- ⑤ 부위정보 팝업을 이용하여 부위정보를 입력
- ⑥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저장

(1) 포장처리 실적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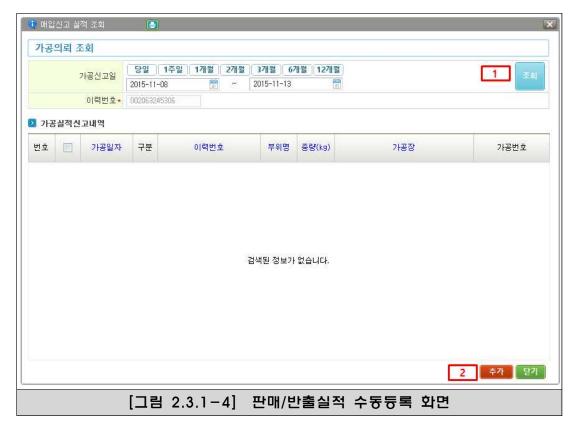


- ① 수동등록 메인화면에서 입력한 이력번호로 포장처리한 내역을 조회
- ② 선택한 실적정보를 수동등록 메인화면에 추가
- (2) 매입신고 실적 조회



- ① 수동등록 메인화면에서 입력한 이력번호로 매입신고한 내역을 조회
- ② 선택한 매입정보를 수동등록 메인화면에 추가

(3) 가공의뢰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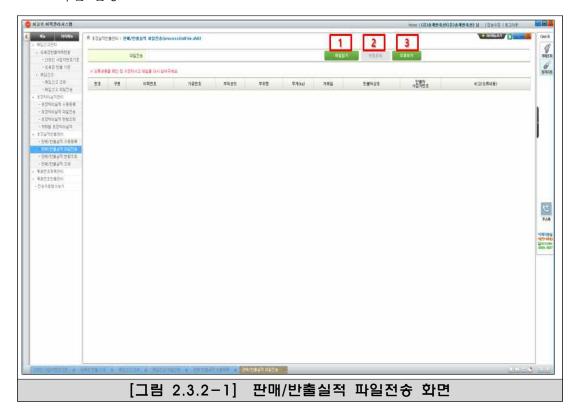


- ① 수동등록 메인화면에서 입력한 개체식별번호로 가공 의뢰되어 포장처리신고한 내역을 조회
- ② 선택한 가공의뢰정보를 수동등록 메인화면에 추가

2.3.2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파일로 일괄 등록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파일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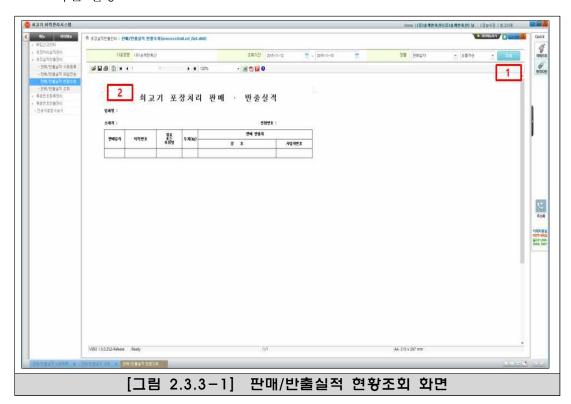


- ① 등록할 파일을 검색하여 읽어 들입니다. 파일을 읽어들일때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정보를 표시
- ② 파일에 오류가 없을 때 활성화 되며 해당파일의 내용으로 매입신고
- ③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부분만 화면의 목록에 나타남

2.3.3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조회하고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현황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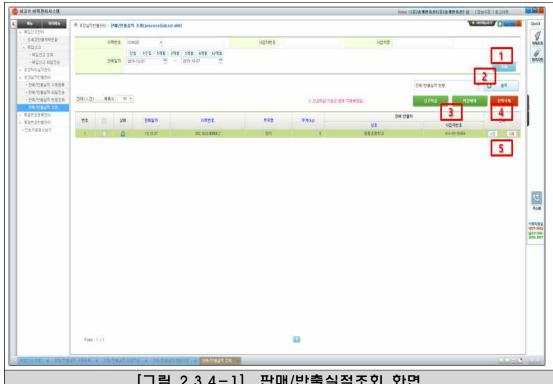


-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조회
- ② 조회된 내역을 엑셀, PDF,한글로 출력·저장할 수 있음

2.3.4 판매/반출실적 조회

■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조회



[그림 2.3.4-1] 판매/반출실적조회 화면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반출신고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음
- ③ 선택한 반출신고의 마감 및 마감해제
- ④ 선택된 반출신고건을 삭제
- ⑤ 조회된 거래내역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이동

(1) 반출내역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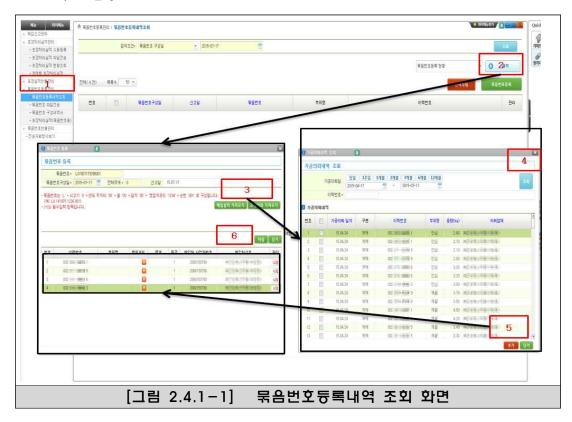
① 수정대상 반출신고의 내용을 수정 (현재 반출 무게만 수정가능하게 되어있음)

2.4 묶음번호 등록관리

2.4.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개요 : 묶음번호 등록한 내역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 묶음번호등록내역조회



- ① '묶음번호등록내역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에 접근
- ② '묶음번호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등록화면을 띄움
- ③ 매입한 개체에 대한 포장은 '매입실적 가져오기' 버튼을, 가공의뢰를 받은 개체에 대한 포장은 '포장의뢰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해당 개체를 조회
- ④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묶음을 구성할 개체들을 조회
- 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개체들을 추가
- 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등록

2.4.2 묶음번호 파일전송

■ 개요 : 묶음번호 신고를 파일로 일괄 등록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파일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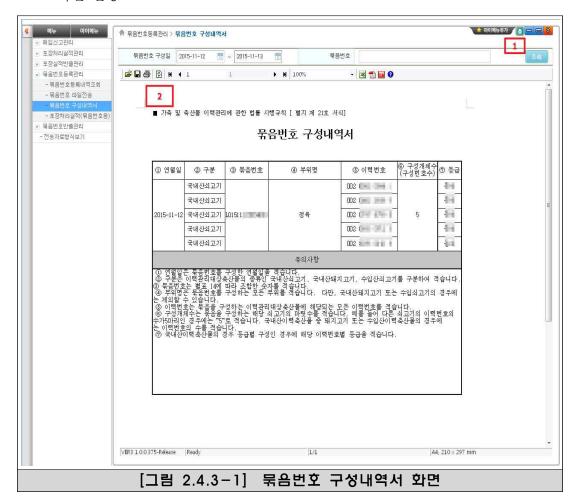


- 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
- ②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전체 전송건수, 오류건수, 개체식별번호별 오류내용과 묶음번호 정보를 조회
- ③ 오류내용을 제외한 묶음번호 정보를 저장

2.4.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개요 : 신고한 묶음번호의 구성 내역을 리포트로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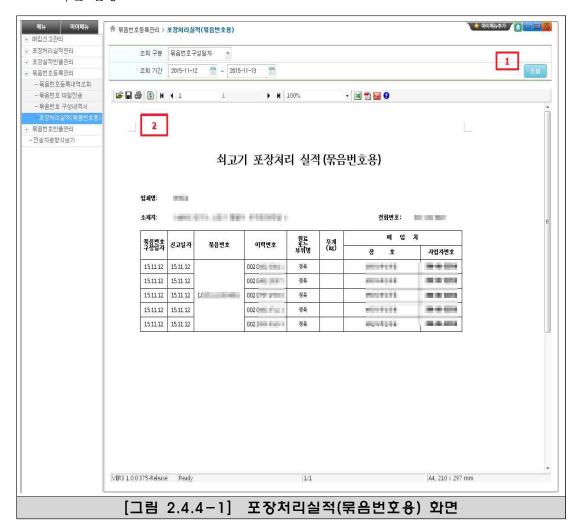


- ① 묶음번호구성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조회
- ②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리포트로 출력

2.4.4 포장처리 실적(묶음번호용)

■ 개요 : 묶음번호용 포장처리 실적을 리포트로 출력

■ 메뉴 접근경로: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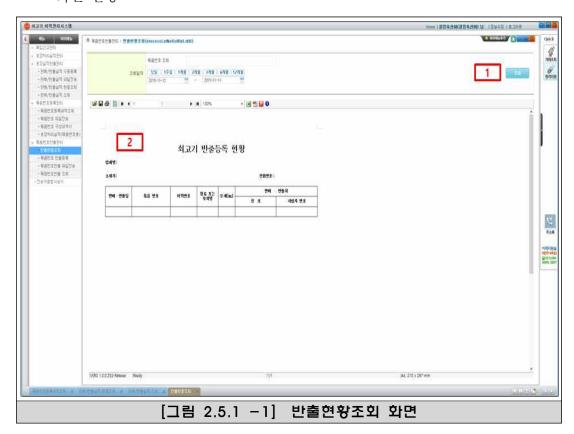
- ① 포장처리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포장처리실적을 조회
- ② 포장처리실적을 리포트로 출력

2.5 묶음번호반출관리

2.5.1 반출현황조회

■ 개요 : 반출 현황을 조회하고 리포트로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관리 > 반출현황조회



- ① 반출등록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실적을 조회
- ② 반출등록 현황을 리포트로 출력

2.5.2 묶음번호 반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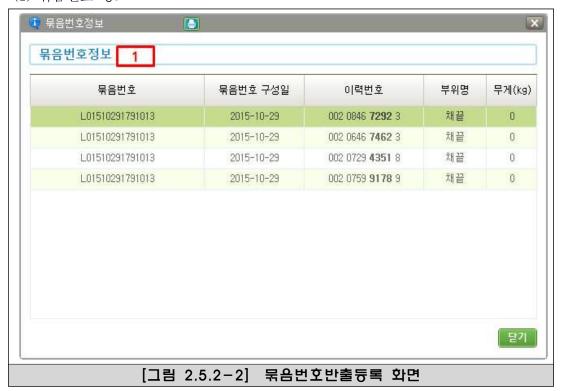
■ 개요 : 반출 정보내역을 입력하고 반출정보를 저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등록



- ① 묶음번호구성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조회
- ② 묶음신고내역과 묶음번호 매입내역이 구분되어 표시
- ③ 조회된 내역을 반출내역에 추가
- ④ 반출정보 내역을 저장 반출내역에서 반출정보 내역을 삭제할 수 있음

(1) 묶음번호 정보



① 묶음번호 구성/매입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회

2.5.3 묶음번호반출 파일전송

■ 개요 : 묶음번호반출정보를 파일로 일괄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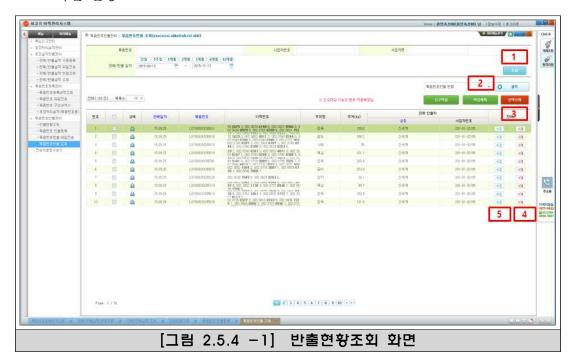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관리 > 묶음번호반출 파일전송



- ① 등록할 파일을 검색하여 읽어 들임 파일을 읽어들일때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정보를 표시
- ② 파일에 오류가 없을 때 활성화 되며 해당파일의 내용으로 매입신고
- ③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부분만 화면의 목록에 나타남

2.5.4 묶음번호 반출 조회

- 개요 : 묶음번호 반출 현황과 거래내역 신고서를 조회하고 리포트로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관리 > 묶음번호반출 조회
- 화면 설명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반출신고현황과 거래내역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음
- ③ 선택한 반출신고의 마감 및 마감해제
- ④ 선택된 반출신고건을 삭제
- ⑤ 조회된 거래내역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이동
 - 해당 반출신고 건을 삭제할 수 있음

(1) 반출내역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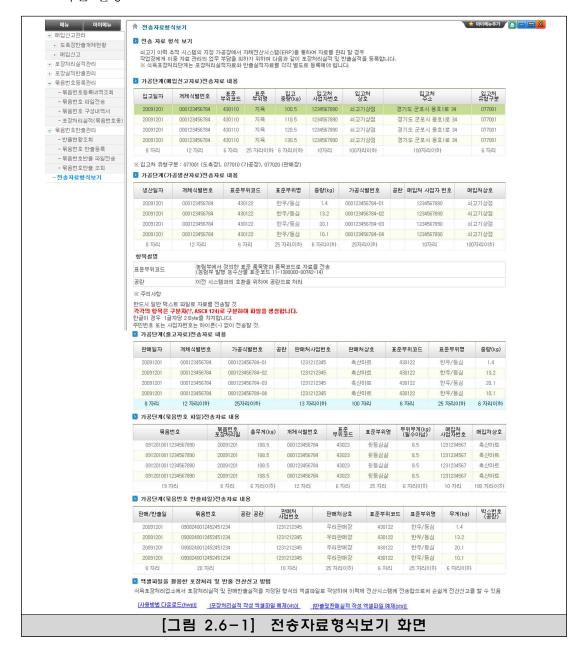


① 수정대상 반출신고건의 내용을 수정 (현재 반출 무게만 수정가능하게 되어있음)

2.6 전송자료형식보기

■ 개요 : 파일전송 형식에 대한 안내 매뉴얼

■ 메뉴 접근경로: 메인 > 전송자료형식보기





3. 판매단계

3.1. 판매단계 업무처리현황

- (1) 업무처리현황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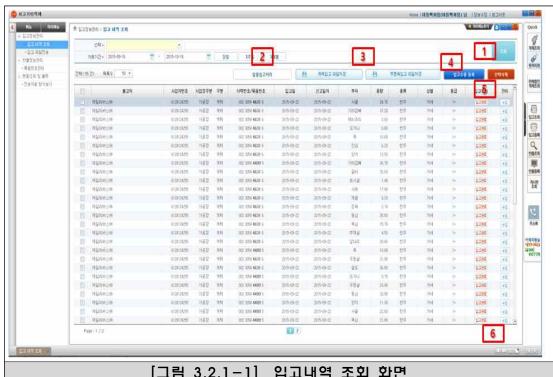
- ① 현재 업무처리현황 건수가 조회 - 입고대기, 판매중, 반출실적, 묶음번호
- ② 판매 중 개체내역 조회
- ③ 판매단계 공지사항 조회

3.2 입고정보관리

3.2.1 입고 내역 조회

■ 개요: 매입신고한 입고내역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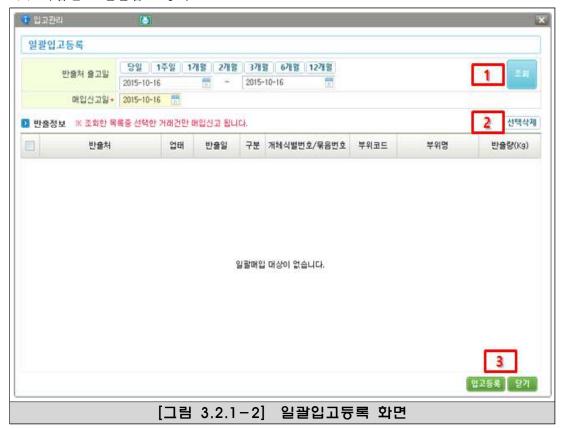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내역조회



[그림 3.2.1-1] 입고내역 조회 화면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일괄입고화면을 호출
- ③ 매입신고된 목록을 엑셀이나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음
- ④ 매입신고를 한건씩 수동 등록할 수 있음
- ⑤ 선택된 매입신고 건을 삭제
- ⑥ 매입신고 건에 대한 입고확인 및 수정작업 화면을 호출

(1) 매입신고 일괄입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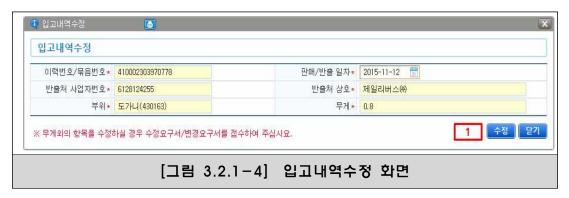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거래 상대방에서 반출하였으나 매입신고되지 않은 거래 내역 조회)
- ② 조회 대상 중 선택한 거래를 목록에서 삭제
- ③ 조회된 거래내역 중 선택된 거래에 대하여 매입신고 등록

(2) 입고 수동 등록



- ① 매입신고 내용을 입력
- ② 매입신고 부위를 선택하여 추가하거나, 추가된 부위중 선택된 부위를 삭제
- ③ 매입신고 저장
- (3) 입고내역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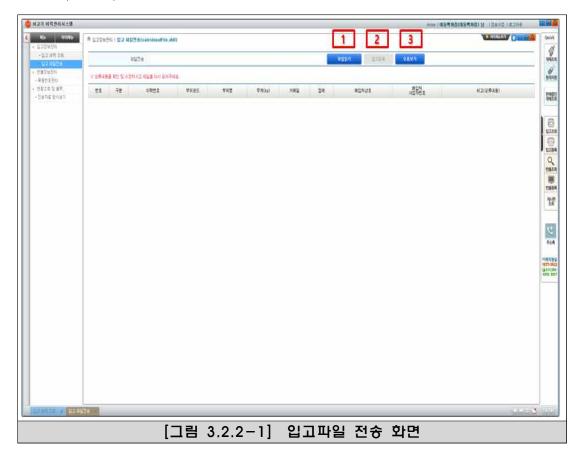


① 수정대상 매입신고건의 내용을 수정 (현재 매입 무게만 수정가능하게 되어있음)

3.2.2 입고 파일전송

■ 개요 : 입고파일을 찾아 파일전송 처리를 하는 기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파일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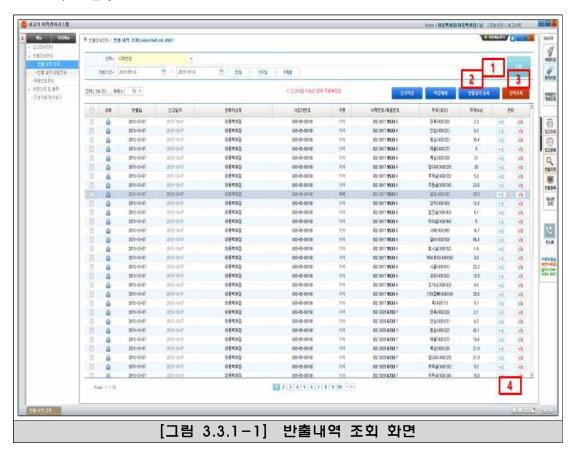
- ① 등록할 파일을 검색하여 읽어 들임 파일을 읽어들일때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정보를 표시
- ② 파일에 오류가 없을 때 활성화 되며 해당파일의 내용으로 매입신고
- ③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부분만 화면의 목록에 나타남

3.3 반출정보관리

3.3.1 반출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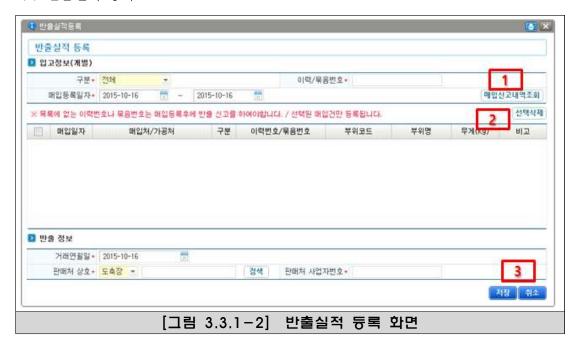
■ 개요 : 반출내역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내역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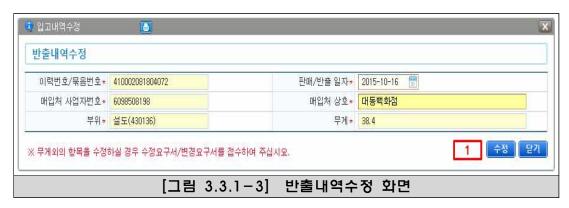


-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
- ② 반출신고를 수동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출력
- ③ 선택된 반출신고 건을 삭제
- ④ 조회된 거래내역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삭제

(1) 반출실적 등록



- ① 반출대상이 되는 매입신고 내용을 조회
- ② 조회된 매입신고건 중 선택된 매입신고 건을 삭제
- ③ 반출정보에 입력한 거래처로 반출정보를 등록
- (2) 반출내역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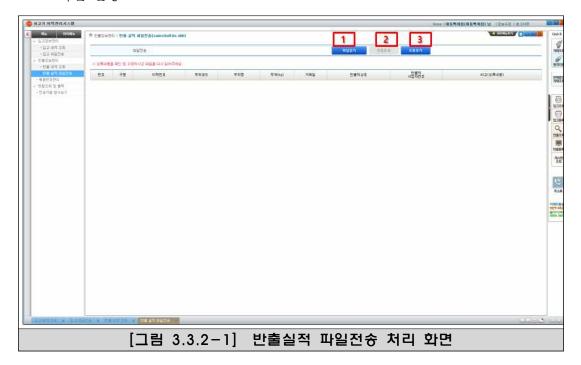


① 수정대상 반출신고건의 내용을 수정 (현재 반출 무게만 수정가능하게 되어있음)

3.3.2 반출실적 파일전송

■ 개요 : 반출실적 파일을 전송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 반출실적 파일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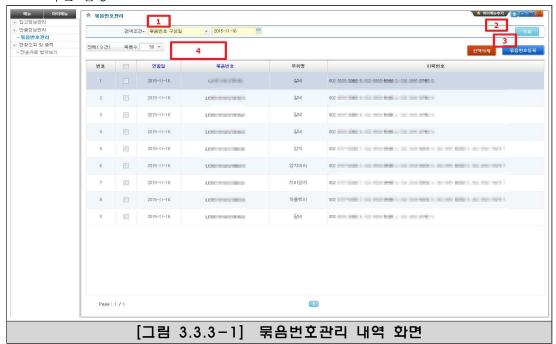


- ① 등록할 파일을 검색하여 읽어 들임 파일을 읽어들일때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정보를 표시
- ② 파일에 오류가 없을 때 활성화 되며 해당파일의 내용으로 반출신고
- ③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부분만 화면의 목록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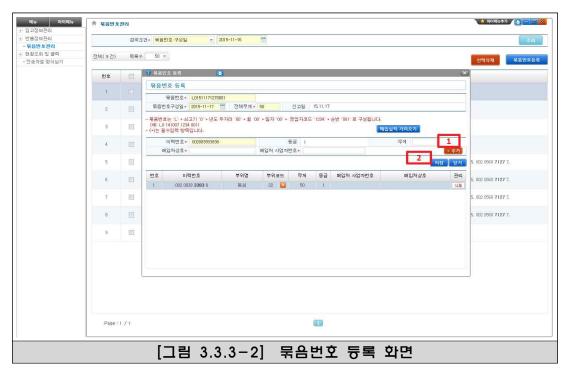
3.3.3 묶음번호관리

■ 개요 : 묶음번호관리 등록을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 묶음번호관리



- ① 묶음번호 LOT, 묶음번호 구성일, 개체식별번호 중 선택
- ② 해당 조회조건에 따라 묶음번호별 내역을 조회
- ③ 묶음번호 등록을 클릭
- ④ 묶음번호구성 내역을 보여줌



- ① 묶음번호 정보 및 개체식별번호, 등급, 무게, 매입처정보를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
- ② 입력한 내용을 저장

3.4 현황조회 및 출력

3.4.1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 개요 : 판매개체에 대한 게시판 내역을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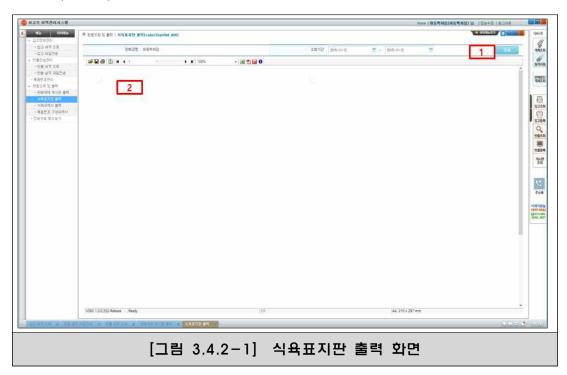


- ① 해당 판매장 및 판매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
- ② 조회된 내역을 출력

3.4.2 식육표지판 출력

■ 개요 : 식육표지판에 대한 표지판 내역을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식육표지판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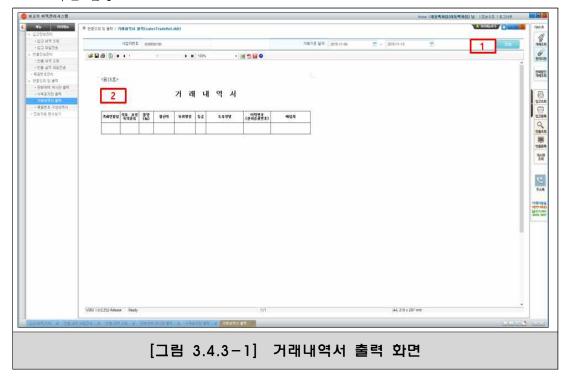


- ① 해당 판매장 및 조회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
- ② 식육판매표지판 내역을 출력

3.4.3 거래내역서 출력

■ 개요 : 거래내역서 내역을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거래내역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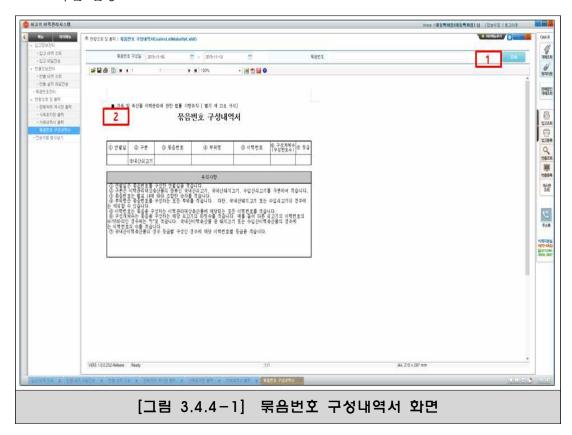
- ① 사업자번호 및 거래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
- ② 거래내역서를 출력

3.4.4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출력

■ 개요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내역을 출력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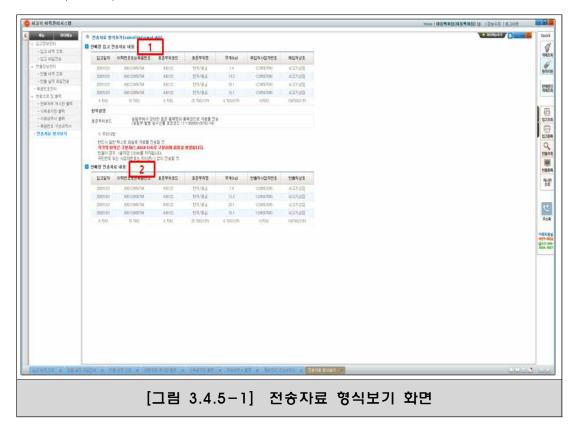
- ① 묶음번호구성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조회
- ②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리포트로 출력

3.4.5 전송자료 형식보기

■ 개요 : 전송자료에 대한 가이드 내역을 조회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전송자료 형식보기

■ 화면 설명



- ① 판매장 입고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됨
- ② 판매장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됨



- 1. 도축단계
- 2. 포장처리단계
- 3. 판매단계
- 4. DNA동일성검사
- 5. 위반자 처분
- 6. 기탁사례



질의 응답



1. 도축단계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く도축 신청 >

- □ 소 도축 전에 도축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뭔가요?
 - ▶ 접수된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및 농장경영자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이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가 가축및축 산물식별대장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표가 위·변조 되었는지 등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귀표가 없는 소인데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선 소속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에 서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부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귀표가 1개만 부착되어 있는데 도축을 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귀표 탈락 등에 대비하여 소의 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좌우에 1개씩 2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축장에서는 부착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등과 일치하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었으면 해당 소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
- □ 귀표는 부착되어 있으나 확인해보니 이력제에 등록 안 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도축해도 될까요?
 - ▶ 안됩니다. 모든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등록 여부, 농장경영자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도축을 해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개체인 경우 도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의 소유자는 관할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전산 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마친 소는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도축이 가능합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도축의뢰소가 이력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송했는데 당일 전산 등록 후 다시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이력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고 농장경영자정보가 일치할 경우 소의 질병 이나 다른 부정한 행위 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도축이 가능합니다.
- □ 재부착 귀표가 부착된 소의 도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체의 양쪽 귀에 각각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가 1개씩 부착 및 관리되어야 하나, 해당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재 부착용귀표에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소에 재부착하고 귀표에 표시된 관리 번호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부착 관리번호가 정상적으로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도축이 가능합니다.
- □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의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소의 귀표번호 조회 시 현재 부착된 번호(1234567)가 아닌 다른 재부착용귀표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재 부착 관리번호인 1234567로 다시 조회해보니 도축 신청된 소의 귀표 번호로 확인 되는데요, 도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귀표는 일반형과 단추형을 각 1개씩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표가 탈락된 경우, 개체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후 이력시스템에 관리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양쪽 모두 재부착용귀표를 달고 있는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마지막에 등록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실제 부착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를 이력시스템에 조회 시 정상적으로 해당 원귀표 번호에 부착됐음이 확인된다면, 도축 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	----------------

< 도축장 의무 사항 >

□ 도축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력시스템) 등록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하여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력시스템에 미등록된 경우에는 도축이 불가하며, 도축 후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등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도축단계에서 전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도축장은 도축업자, 위생검사관, 품질평가사가 업무처리를 담당합니다.
- 도축업자 :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에, 또한 도매시장 (경매)의 경매내역을 경매가 완료된 당일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시스템에 날짜 별로 입력 및 관리
- 위생검사관 :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시스템에 입력
- 축산물 품질평가사 : 등급판정 결과를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또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도축업자는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하고, 기록일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도축 후에는 도체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반출해야 합니다.

□ 도축 후에 귀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소를 도축한 후 귀표는 전부 수거한 후 파쇄하거나 세절하여 귀표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 도축장에서 도축정보 업로드 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를 지정하여, 전산에 등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 도축장 담당자 전산매뉴 중 [지정반출처관리]메뉴에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 정보를 등록하시면 파일 업로드 시 손쉽게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도축장 의무사항 _ 이력번호 표시 >

- □ 생고기로 반출되는 쇠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해야 하므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생고기에는 반드시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부위로 등급판정 전에 반출되는데 이런 경 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 물론입니다. 당일 반출되는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도 이력제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머리나 내장 같은 부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의해 국내산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은 이력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소,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산물인 소의 머리나 내장 등은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계구분 1	. 도축	문의유형	2. 도축정보 관리
--------	------	------	------------

〈도축. 경매 정보 등록 〉

□ 도축정보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내용과 도축처리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도축정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도축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있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도축장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파일을 이력시스템 [도축신청 관리]의 [도축검사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없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축산물안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아 이력시스템 [도축신청관리]의 [도축검사 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도축정보 등록 시 파일을 이용해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개체별로 직접 등록을 원할 경우, [도축신청관리]의 [도축신청수동등록] 메뉴 에서 해당 개체번호 및 도축신청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경매 신고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협 소속 도매시장은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가축시장, 도매시장, 도축장, 판매장, 포장처리업소)을 통해 통합으로 관리하며, 거래내역은 전용망을 통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매 시장의 경매결과는 TXT파일이나 Excel파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신고가능합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2. 도축정보 관리

< 도축정보 수정·삭제 >

□ 도축되었는데 등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정상도축이 된 경우라도 품질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축한 다음날에 등급정보 입력 후 마감처리 됨으로, 도축 후 시일이 경과된 개체라면 해당 도축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축정보를 오등록해서 수정하려는데 수정버튼이 안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해당 쇠고기의 등급정보가 마감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 후 마감 하면 도축개체에 대한 업무가 모두 끝난 것이므로 도축정보 수정이 불가합니다.



[도축장 메뉴.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 등급 마감된 개체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등급이 마감된 개체의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라면 품질평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된 상태에서는 정보수정이 불가하지만, 품질 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해제하면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2. 도축정보 관리

- □ 도축 신청 후 입력된 도축 목록에서 신청인 성명이 상이합니다. 도축 목록상에서 해당 신청인을 클릭하여 수정하려고 했지만 수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을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 ▶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먼저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메뉴에서 해당 신청인이 어떤 성명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인이 잘못 등록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개체번호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신청인 성명을 맞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축신청인관리 메뉴에서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명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마감 전에만 가능하며 등급 마감 후에는 도축정보 수정 및 삭제 불가합니다.
- □ 도축정보 등록 시 이력번호를 잘못 등록했는데 삭제가 가능한가요?
 - ► 등급 마감 전이라면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도축신청조회]에 해당개체를 삭제하면 등록한 도축정보가 삭제됩니다.
- □ 도축장으로 출하한 개체의 정보가 폐사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현재 사육 상태의 개체만 도축정보등록이 가능하므로 폐사상태로 등록되어있는 개체는 도축정보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제 사육중인 개체라면, 관할 위탁기관에서 소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귀표번호가 잘 보이는 소 사진과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 하여 이력지원실로 개체상태변경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사육" 상태로 변경한 후, 도축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 도축 신청이 들어온 개체에 귀표도 부착되어 있고 이력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으나 이미 도축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이미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한 소가 발견되면 우선 도축을 금지하고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해당 개체의 귀표 위·변조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어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개체식별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 도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요청을 받은 이력지원실은 농협 중앙회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를 등록합니다.

단계구분 1. 5	문 축 문의유형	2. 도축정보 관리
-----------	-----------------	------------

- □ 도축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소의 종류, 성별, 개월령(출생일자) 등의 정보와 이력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소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의 도축이 의뢰되면 해당 개체의 도축을 잠시 보류하고 경영자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정보수정 등을 위해 관할 위탁기관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력시스템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후 도축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축 이후 위생검사관이 도축검사결과를 입력할 때 실제 올바른 종류 및 성별로 입력하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정보가 최종 입력한 값으로 변경되니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축장 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 도축 대기 중인 소가 이력시스템 상에서 젖소로 조회되나 농장경영자가 육우라고 항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농장경영자가 해당 소의 종류 변경을 원한다면, 농가에서 육우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할 위탁기관에서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 위탁기관장 사실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소의 개월령이 36개월 이상이라면 수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분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 전신사진(귀표번호 포함)까지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에서는 수의사와의 통화를 거쳐 진단확인 후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 □ 도축이 의뢰된 개체입니다. 브루셀라검사증명서가 간소화됨에 따라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검사여부는 축산물이력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을 경우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 ▶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시면, 하단에 최종 브루셀라 검사 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구분 1. 도축 문의유형 2. 도축정보 관리



- □ 도축신청 메뉴에서 도축신청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후 전송내역을 확인 하니 브루셀라 정보가 이력제에서 조회한 내역과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도축신청정보 파일 전송 시 브루셀라 접종 정보는 전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조회 시점에 따라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 전송 후 조회되는 도축 신청정보 현황 메뉴에서 [도축신청정보 엑셀 다운로드]메뉴 하단 [브루셀라 실시간 호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 □ 도축장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는데 이력번호만 나오고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 ▶ [지육라벨출력] 메뉴에서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출력에 필요한 일부 파일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력시스템 전산 메인화면 하단 공지사항의 우측 더보기 에서 2012.12.20. 공지사항 게시글 '화면에 바코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를 참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지사항 내용 참고로 기재함)

- ※ 참고 : 공지사항에 첨부된 TBarCode5.ocx 파일을 다운로드해 C:\Windows\에 복사해 넣고, 시작 → 실행에서 regsvr32 "C:\Windows\TBarCode5.ocx"라고 입력하시면 등록이 완료되어 다시 출력화면을 실행하면 바코드가 정상표기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클립소프트 기술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객센터: 02-865-1644)
- □ 도축장에서 전산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바코드만 나오고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화면에 바코드는 확인되나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력제 프로그램 설치 시 리포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에서 설치된 프로그램 중 Rexpert3.0 Viewer를 찾아 삭제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 중앙의 [프로 그램다운로드]를 클릭해 나오는 팝업창에서 4번 리포트에 해당하는 Rexpert3.0 Viewer를 설치하시고 이력제에 재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이력번호가 조회됩니다.



2. 포장처리단계

단계구분 2. 포장처리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시행 대상 >

- □ 이력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① 도축 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그 밖에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처리업소에서는 이력지원실로 사업자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낸 후 아이디를 발급받아 반드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이력시스템에 날짜 별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전산신고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원하는 경우, 포장처리업소의 관리감독기 관인 해당 시·도 / 시·군·구 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 전산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 전산신고 의무대상에 부합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요청하는 경우 이력 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6번(2015-3-17)에 게시된 식육포장·판매업소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시스템 아이디를 부여해 드립니다.

※ 첨부서류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및 업무 담당자 서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 1년에 두 마리 정도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데 이력제를 해야 하나요?
 - ▶ 국내산쇠고기를 포장처리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량의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더라도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력번호도 꼭 표시해야 합니다.

단계구분 2. 포장처리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수입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인데 이력시스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 수입육은 이력제 대상은 맞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스템(1688-0026)으로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력제 사용 중인 포장처리업소 입니다. 2013년도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인 포장처리 업소였으나, 2014년에 종업원이 3인으로 줄었습니다. 도축장에 연접한 영업장도 아닌데, 2015년부터는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전산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은 도축장 연접 및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 수 5인 이상입니다.따라서 2015년 전년인 2014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후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면 됩니다.

- ※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요청 방법
- 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201번(2015-6-30)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 □ 포장처리업소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업장이 주소 이전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계속 사용 가능하나요?
 - ▶ 아닙니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기존 아이디의 신상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사용하셔야 됩니다.
-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양념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입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 아닙니다. 축산물이력제의 시행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합 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는 양념육 취급업소는 이력번호 표시나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계구분 2. 포장처리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 [소비자] 마트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을 조회하니 다른 정보는 모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① 도축 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의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포장처리업자는 이력제 전산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장부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산 상 포장처리업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무 사항 >

- □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뭔가요?
 -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한 쇠고기에 이력(묶음)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대상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비 전산신고 대상자는 자체 장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 거래내역 관리는 축산물이력제로 개정된 2014.12.28. 이후부터 의무화됨
- □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가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 전산신고 비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 및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쇠고기의 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쇠고기의 매입·반입내역, 포장처리·묶음구성내역 및 판매·반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2년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 부산물은 개체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 맞습니다.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번호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를 도살 처리 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해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의 머리, 내장 등의 부산물은 이력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내역과 포장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산물 이외에 양념육도 이력제 대상이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구분 2. 포장처리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 후 붙이는 라벨지에 이력번호가 꼭 들어가야만 하나요?

▶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력번호는 필수적으로 표시 하셔야 합니다.

□ 판매(반출)도 전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반출)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 혹은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비대상인 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이력 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실적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출력이 가능한 저울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중 전산신고 의무대상인 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묶음번호 >

□ 묶음번호가 무엇인가요?

▶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묶음번호 표시의 정해진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묶음번호는 총 15자리[묶음고정코드(1)+구분코드(1)+묶음날짜코드(6)+영업자코드(4)+ 일련번호(3)]로 구성됩니다.

묶음고정코드는 묶음을 나타내는 LOT의 약자인 L로 고정된 값입니다. 구분코드는 축종에 따라 소는 0, 돼지는 1로 표시하며, 묶음날짜코드는 묶음을 구성한 날짜를 연월일 6자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영업자코드 4자리는 전산신고 의무대상이면 전산 상에서따로 부여해드리며, 비의무대상인 경우 업장의 사업자번호 10자리의 마지막 5자리 중끝에 한자리를 제외한 4자리의 숫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련번호 3자리는묶음구성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전산신고 비대상 업체(412-81-12345)에서 '15년1월27일 가공한 쇠고기의 묶음번호 : L 0 150127 1234 001

□ 묶음번호는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나요?

► 묶음번호 구성은 개체 20마리 이하로 가능하며,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분쇄육, 세절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묶음번호는 다수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 할 경우 표시하며, 표시할 경우 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국내산쇠고기			002 0731 5665 6	. 10	1+
	국내산쇠고기			002 0806 2459 2		1+
	국내산쇠고기			002 0840 9117 2		1+
	국내산쇠고기		앞다리살, 사태, 목심	002 0855 1015 9		1+
2015-11-02	국내산쇠고기	T.01511023462006		002 0863 0165 2		1+
2015-11-02	국내산쇠고기	1		002 0869 9268 4		1+
	국내산쇠고기			002 3024 5103 6		1+
	국내산쇠고기			002 3047 9315 7		1+
	국내산쇠고기		앞다리살, 목심, 사태	002 3056 6395 1		1+
	국내산쇠고기		료너더글, 숙심, 시대	002 3056 6436 6		1+

유의사항

- 전습니다.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자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
- ③ 묶능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소압한 숫사를 직급되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 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 등급이 동일한 경우 육우와 한우를 묶음번호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묶음번호는 소의 종류가 동일해야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 한우 갈비와 양지를 묶음번호로 묶을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다만, 갈비와 양지는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의 종류와 등급이 동일하면 묶음번호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 등급표시 의무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 안심과 안창살을 묶음구성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묶음구성하려는 부위 중 등급표시 의무부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묶음 내 개체의 등급이 모두 동일해야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심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안창살과 동일한 등급인 경우에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묶음번호는 다수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 할 경우 표시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_ 매입·반입실적 >

- □ 도축 의뢰했던 개체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포장처리실적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 ▶ 포장처리실적신고는 매입이 등록된 개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고처에 대한 정보를 넣고 매입·반입신고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매입 신고 시 필수 입력항목이 무엇입니까?

▶ 매입 신고 시에는 입고일자, 이력(묶음)번호, 입고 부위명 및 부위코드, 입고중량, 입고처 유형/상호/사업자번호/주소를 필수 기재해야 하며, 부위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산 의무 대상 포장처리업체입니다. 매입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매입내역 전산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내 포장처리업소) 도축장에서 자육이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도축정반출개체현황] 하단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신고 시 의뢰인을 A로 넣은 경우 [신청인 사업자번호기준] 메뉴에서 해당 개체가 조회되며, 도축장에서 A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도축장 반출 기준]에서 조회됩니다. 도축장 외의 사업장에서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매입신고] 하단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신고 조회] 메뉴에서는 입고일자 등의 필수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매입신고 파일전송] 메뉴에서는 txt, csv 파일로 작성된 매입내역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 업로드는 이력제와 해당 프로그램의 형식이 동일할 때 가능하므로, 왼쪽 메뉴 최하 단의 [전송자료형식보기]를 참고하여 파일형식을 맞추어 작성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신고 _ 포장처리실적 >

□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실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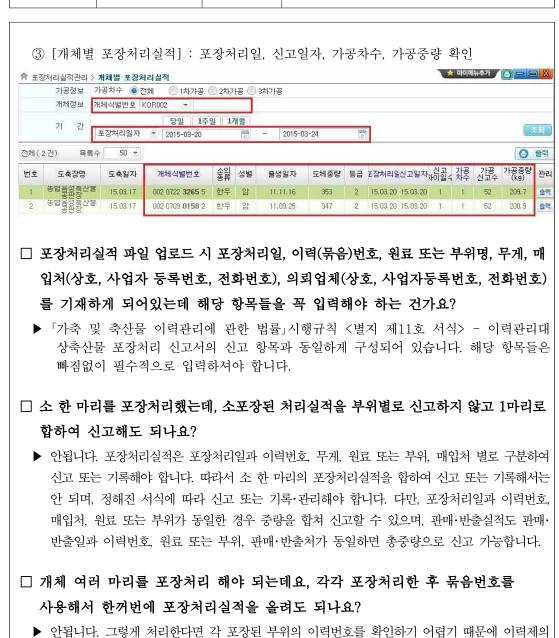
▶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 항목은 포장처리일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반입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 그리고 의뢰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입니다.

여기서 부위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매입처는 실제 쇠고기를 사온 곳, 의뢰업체는 임가공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포장처리실적에 매입처와 의뢰업체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하며, 매입처와 의뢰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 [포장실적반출관리] 하단 메뉴에서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합니다.
-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개체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당 개체마다 부위별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 각각의 포장 처리실적을 입력하고, 부득이하게 2마리 이상 개체를 섞어서 포장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납품 받은 부분육을 입고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실제 포장처리한 내역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육 과 같이 직접 포장처리 하지 않은 고기는 매입·반입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판매·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실적을 올린 원료육을 매입해서 재가공했습니다. 제가 포장처리실적을 올리면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장처리실적은 각각 포장처리업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는 부분이므로 이전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그대로 보이고, 현재 작업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면 포장처리정보가 추가되어 함께 보이게 됩니다.



3. 판매단계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시행 대상 >

- □ 이력제 시행을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 전산신고 대상인 식육판매업자란,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신고를이력관리시스템에 날짜별로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도 이력제 대상인가요?
 - ▶ 일반 식당은 이력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는 이력번호 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육판매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식당이라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므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매입·반입실적을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해서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에서 요리해 판매하는 쇠고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무 사항 >

- □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 ▶ 판매업소에서는 라벨지나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 포함)하고 매입·반입은 1년, 판매·반출은 2년간 보관·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판매업소에서 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는 없으며,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 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거래내역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이력번호가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하거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이력번호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해 전자저울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비쌉니다.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 안 해주나요?
 - ▶ 전자저울 사용은 판매업소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력번호의 표시가 의무사항이지만 꼭 전자라벨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수기로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까지 일일이 신고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업체끼리의 거래내역만 신고하면 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건은 신고 또는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소비자가 쇼케이스에 진열 중인 쇠고기를 구매한 경우에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해줘야 하나요?
 - ▶ 아닙니다. 판매업소에서 진열판매대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비닐봉투 등에 이력번호를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소비자]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력제에 개체 조회 시 구매한 판매업소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범위에 의해 판매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 사항
------	-------	------	------------------

□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쇠고기에도 모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분육을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라벨이 이미 부착되었을 것이므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후 판매하면 되고, 라벨이 미부착된 지육 등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종류/등급 등이 동일한 쇠고기를 포장해 담은 후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지판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기로 이력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력번호 이외의 축산물 표시기준(라벨지나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시스템 이용 신청 >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꼭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판매업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은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인 자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업소라면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판매업소에서 이력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6번(2014-3-17)에 게시된 [식육포장·판매업소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 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 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시스템 아이디를 부여해드립니다.
- ※ 첨부서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및 업무 담당자 서류,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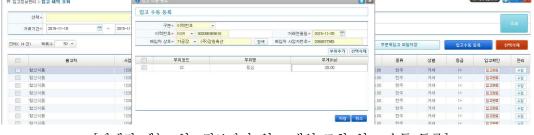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2. 이력시스템의 이용	
□ 전산신고 대상 판매업소입니다 매입, 매출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에 따라 거래(매입·반입, 판매· 반출)실적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해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국내산이 <별지 저 제22호서	'를 할 필요는 (력축산물을 거리	없지만, 거래내역 대하는 경우, 「기 내산이력축산물의 대상축산물 판매·	, 매출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념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 거래신고서>에 따라 매입·반입실적을, 〈별지 반출 실적>에 따라 판매·반출실적을 장부에 날짜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2. 이력시스템의 이용
------	-------	------	--------------

□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신고 했는데, 입고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포장처리업소에서 전산 상 판매•반출을 신고했다면 반출처로 등록한 판매장의 [입고 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판매처 전산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선 포장처리업소의 [포장실적반출관리-판매/반출실적조회] 메뉴에서 해당 판매업소의 사업자번호로 올바르게 출고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매입처에서 반출신고가 누락되어 입고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고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수동으로 등록하거나 [입고정보관리-입고파일 전송]에서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 내역 조회-입고 수동 등록]



단계구분 3. 판매 문의유형 2. 이력시스템의 이용

- □ A라는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 받은 부분육을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A 포장 처리업소 뿐만 아니라 B라는 포장처리업소도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 지육의 경우, 구입처의 요구에 따라 이분도체, 사분도체, 또는 부위별로 나눠질 수 있으며, 해당 부위들이 여러 포장처리업소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한 두 포장처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해서 정보가 조회되는 것이므로, 판매장에서는 내가 매입한



브루셀라 검사최종일자 2015-03-17 브루셀라 검사결과 음성 ※ 브루셀라 검사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에서 제공된 정보임.(http://www.agrix.go.kr)

※ 브루셀라 검사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축산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4. DNA동일성검사

단계구분 4.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1. DNA검사 개념 및 검사기관

- □ 유통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이력번호를 가짜로 받아서 판매할 때 단속방법은 무엇인가요?
 - ▶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해당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임. 시·도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 보관중인 시료와함께 DNA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수입산과의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DNA는 무엇이며, 쇠고기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DNA동일성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 ▶ 소와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와 민간 검사기관 등 15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시·도에서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 매업자 지도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합니다.

단계구분 4.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1. DNA검사 개념 및 검사기관

□ DNA시료 채취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지요?

▶ DNA시료 채취는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입니다. 다만, 사육지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며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 □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결과는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요?
 -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DNA동일성 검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방법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mtrace.go.kr)에 접속한 후,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 메뉴로 들어가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의 아이디/패스워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계구분 4.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진위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 판매 또는 진열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영수증 또는 구입처 추적조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거나 이력제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함. 이를 위해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지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쇠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됩니다.

농장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귀표가 부착된 소의 경우에는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 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이력번호 표시 쇠고기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을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해서 각각의 시료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합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가요?

▶ DNA동일성검사는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한우판별 검사방법과 달리,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쇠고기이력제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한우 여부 판정은 위탁기관에서 사육농가로부터 소 출생 등 신고를 받아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장에 등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한우기준'에 의해 판별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소가 도축 의뢰될 때에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관이 외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의 종류를 다시 확인 후에 도축하고 있습니다.

단계구분 4.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판매 중인 쇠고기의 한우, 비한우, 젖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할 때에 인공 수정증명서,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우여부를 판별한 후에 소의 종류를 가축 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서 소의 종류에 대해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자문단을 통해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도 판별이 어려운 때에는 DNA 친자감별법 등을 통해 최종 검증하고 있습니다.
- □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DNA동일성검사와 한우확인시험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한우확인시험법은 한우판별 마커(marker)를 사용하여 한우형과 비한우형(육우, 젖소, 수입산 포함)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의 빈도 및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의 대립유전자가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한우형'과 '비한우형'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DNA동일성검사는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으로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추천하는 9개의 마커와 소에서 특이적인 마커 2개 등을 사용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2개 내지 7개 내외의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를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일치'와 '불일치'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 □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정육점의 경우 DNA동일성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 소형 정육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 또는 둔갑판매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등과 일치 하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열중인 쇠고기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 쇠고기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단계구분 4.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외국에서도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지요?

- ▶ 쇠고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 중 DNA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DNA동일성 검사방법은 일본과 같은 방법이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회사(Genetic solution社)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 별로 검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몇 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만료 된 시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 ▶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되며 기한이 경과되면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하며,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학교급식소 등에서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학교급식 또는 소비자 등이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5. 위반자 처분

단계구분 5. 위반자 처분 문의유형 1. 벌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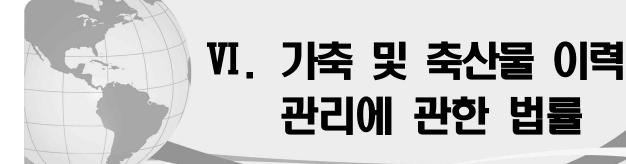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 법 시행으로 소 사육농가, 식육유통업체 등이 쇠고기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뗴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 이력번호 거짓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요?
 - ▶ 이력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소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 □ 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이력제 법에서 처벌 가능한지요?
 - ▶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되며,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는지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 식육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 을 운영 중입니다.
 -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질의응답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기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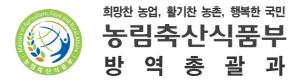
단계구분 6. 기타사례 문의유형 1. 기타 □ 소비자 등이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앱(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앱)을 활용해서 조회 할 수 있으며 2G폰은 국번 없이 6626과 무선 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판매장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력번호를 이용하여 사육농가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요?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농장식별번호, 소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소의 출생일, 가축의 종류, 소의 암수구분, 가축사육 시설의 소재지, 농장경영자의 이름,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및 도축검사 결과, 등급판정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도체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 사육농가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사육농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현황을 조회하거나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육농가 사용 신청 이후에 조회 및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이력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관리 위탁기관으로 승인요청 한 다음 이용이 가능 합니다.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 시행령 별표
- 3.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 4.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검사방법(고시)
- 5.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고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4. 12. 2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축산물을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출생·수입등 사육과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소와 돼지를말한다. 5. "종돈"이란「축산법」제2조제2호에 따른종축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등록기준에따라등록된돼지를말한다.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 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제7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 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 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 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기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 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 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 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 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위해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폐기 또는 회수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제4조(위해축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 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이력관리 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 경영자 및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 지(종돈은 제외한다)는 품질평가원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은 제외한다) 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한 날 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 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 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가축의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 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 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 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 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 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 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 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 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한다.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 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 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 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 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 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 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종돈은 제외한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 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 대상가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 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기한,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 물수입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실 신청하려면 별지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이력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 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축산물수 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이 럭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한다.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 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제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축산물수입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축산 물수입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 리법」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 (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식육포 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 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 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 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 업자"라 한다)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 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품질 평가원장에게 제출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 본부장에게 제출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 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 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 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라.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마.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에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바.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휴게음 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 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위탁급 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 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 는 자 3.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 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 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 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수입산이력축산물로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인터넷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한다) 6.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한다)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통신판매업의 신고를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한다) 8.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 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3장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의 작성·관리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 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종돈의 종류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양수·이동 내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12. 돼지 사육시설의 사육두수(암수 구분) 13.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4.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 「축산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 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이력번호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 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2. 수입신고필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9.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0.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 (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 년을 말한다.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 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 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품질평가원장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 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 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 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 우]: 품질평가원장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 록기관의 장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 림 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 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 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 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 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 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 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반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식별번호 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 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1. 「축산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 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 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 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 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③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 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 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통보,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 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 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 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 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 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 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제28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검역본부장(수입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품질평 가원장(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해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심사·발급·갱신·표시·취소 등에 대한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해축산물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해축산물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해축산물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또는제3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사본 또는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2.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하려는자는인증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갱신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영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기록한 경우 4.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과 관련된 위반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6. 제7항에 따른 표시·광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⑦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1. 영업장 출입구 등에 인증받은 영업장임을표시한 간판 부착 2.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받은 영업장이라는내용의 광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 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 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 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 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인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 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 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 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 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 의 접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 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존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 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가축 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 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중,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 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 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 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구축 등에 드는 비용	
제6장 벌 칙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 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 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 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 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시행일:2015.6.28] 제32조제2항제12호의 개 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 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 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및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의 신청 접수, 인증, 인증 갱신,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제1항제17호, 제34조제1항제18호, 제34조 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 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 에 관한 사항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 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 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 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⑤고유번호"를 "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 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 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 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 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 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 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 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2. 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
- 3. 제5조의 개정규정
-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 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장식별번호"로. "⑩개체식별번호"를 "⑩이력 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 호 중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 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l6·l8"을 "l8"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 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 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 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으로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 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 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2.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근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법조문	1차	2차	3차	4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법 제34조	10	20	40	160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1호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0	20	40	160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 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10	20	40	160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0	20	40	160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10	20	40	16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 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 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0	40	80	320
아.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 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50	100	200	400
자.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10	20	40	160
차.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 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 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20	40	80	320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 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10	20	40	160
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 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10	20	40	160
거.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10	20	40	160
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0	20	40	160
더.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40	80	160	320
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30	60	120	240
머.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30	60	120	240
버.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 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50	100	200	400
서.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20	40	80	320
				l		



3.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순번	<u>기계인 기계인</u> 품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선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pleen	
16	소 생식기	Beef Reproductive Organ	
17	소 식용 가죽	Beef Edible Skin	
18	소 신장	Beef Kidney	
19	소 심장	Beef Heart	
20	소 위	Beef Tripe	
21	소 유방	Beef Breast	
22	소 입술	Beef Lips	
23	소 자궁	Beef Uterus	
24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Salted/Brined Beef Gut(Casing)	
25	소 장간막	Beef Mesentery	
26	소 족	Beef Feet	
27	소 지방	Beef fat	
28	소 창자	Beef Gut	
29	소 척수	Beef Spinal Cord	
30	소 췌장	Beef Pancreas	
31	소 편도	Beef Tonsil	
32	소 허파	Beef Lung	
33	소 혀	Beef Tongue	
34	소 횡격막	Beef Diaphragm	
35	소 흉선	Beef Thymus	
3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부위	

[별표 2]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4항 관련)

1.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 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신고할 수 있다.

2. 신청 내용

항목	내	용
신청인	가. 성명	다. 주소(거주지)
_ + _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	라. 전화번호
(농장경영자)	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 사육가축의 종류(소, 돼지)	라. 관리자 성명 및 전화번호
가축사육시설 정보	나. 농장명칭	마. GPS좌표
	다. 사육시설 소재지	마. 사육개시일 연월일
사육규모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두수	

3.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방법

-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발급(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나.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로 부여한다.
 -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다.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하나의 가축사육 시설(농장)에 농장경영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4. 농장식별번호의 기록·관리

-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농장식별번호가 가축 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다. 품질평가원장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함 수 있다.

나.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라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대신하여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돼지를 도축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 가. 공통 신고사항
- 1)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2) 농장경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3)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5) 농장식별번호
- 6) 사육시설의 소재지
- 7) 사육개시 연월일

나. 출생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구 분	소	종돈
	1) 출생 연월일	1) 출생 연월일
	2) 암수 구분	2) 혈통등록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연월일
	(암, 수, 거세우, 프리마틴)	3) 혈통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증명서 번호
	3) 소의 종류	4) 암수 구분(암, 수)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	5) 종돈의 종류[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
신고 내용	4) 부의 개체식별번호	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
	5) 모의 개체식별번호	(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수입종돈, 번식용씨돼지,
		기타
		6) 부의 개체식별번호
		7) 모의 개체식별번호

다. 수입・수출 신고

- 1) 수입·수출 연월일
- 2)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 기타) 및 마리 수
- 4) 소 또는 종돈의 종류
- 5) 원산지(국가명)

라.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

- 1) 농장식별번호
- 2) 개체식별번호
- 3)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 구분
- 4) 양도자·양수자 성명(사업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5)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6) 양도 또는 양수 연월일
- 7) 돼지의 경우 종류별 마리 수
- 8) 정확한 양도자·양수자를 모르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경우에는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 9)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마. 폐사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 1) 개체식별번호
- 2) 폐사일

- 3) 가축의 종류(소, 종돈)
- 4) 폐사 원인
- 5) 폐사처리방법
- 바.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 1) 가축시장정보(가축시장명, 소재지,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2) 거래 연월일
- 3) 개체식별번호(소의 종류, 성별, 출생연월일)
- 4) 농장식별번호(사육시설 주소)
- 5) 양도·양수 신고 구분
- 6) 양도자·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 7) 양도자·양수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8) 정확한 양도자·양수자를 모르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경우에는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신고 내용을 기록·보관(전자적 서류를 포함한다)하고,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체식별번호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램과 고유의 숫자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부여방법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				
	2) 글자 색상: 검은색				
	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				
	나. 재부착용 귀표의 규격				
귀표등의 규격	1) 크기: (가로) 55㎜~70㎜, (세]로) 65㎜~85㎜				
	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				
	다. 귀표의 모양				
	일반형 단추형 재부착용				
	© 002 © 0070 © 0070				
	3393 1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를 소의 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귀표등의	나.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				
부착·표시	다.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등으로 사육되어 귀표의 부착이				
방법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0 0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귀표등의 관리 등

- 가.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 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나.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개체식별 번호의 구성

- 가.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나.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램과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다.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귀표의 규격

- 1) 귀표등의 크기
 - 가) 일반형: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
 -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35㎜
 - 다) 재부착용: 일반형으로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
- 2) 귀표등의 글자 색상: 검은색

귀표등의 규격

- 3) 귀표등의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되, 종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4) 귀표등의 표시사항: 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개체식별번호,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
- 나. 귀표는 일반형, 단추형을 각각 양쪽 귀에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쪽 귀에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 다. 이각(耳殼, 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절개된 모양 등 에 따라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입묵(入墨, 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귀표등의 규격	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 규격은 (가로)5㎜ (세로)7㎜ 이내로 한다.	
기표하여 비석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표등에는 귀표, 이각, 입묵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각 또는 입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귀표등의	다. 귀에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기효증의 부착·표시	표시하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 ' = ' '	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방법	라. 귀에 입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	
	마. 귀에 입묵과 이각을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바.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육되어 귀표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른다.	

[별표 5]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			
1.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농장식별번호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	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			
	가. 농장식별표시기 규격			
	1) 숫자판 크기: (가로) 20mm~25mm이내, (세로) 80mm~102mm이내			
	2) 사용 잉크: 식용색소 적색 3호			
	3) 표시기 모양(예)			
	← 102mm0 L → + + + + + + + + + + + + + + + + + +			
2.	_^			
	hiduuus Z			
규격 등	J			
	나. 농장식별번호 표시 귀표등의 규격			
	1) 크기 : 별표 4에 따른 종돈의 귀표등 규격을 따른다.			
	2) 표시 : 농장식별번호 6자리를 크게 표시하고, 그 밖에 돼지의 순번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장식별표시기 또는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가 적절하게 돼지에 표시 될 수			
- - - - - - - - - - - - - - - - - - -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등의 관리 등	나. 농장식별표시기는 질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으로			
	│ 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 그 밖에 돼지의 정하는 바에 따				
[경이도 바에 버	는데.			

[별표 6]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 (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가. 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공통 신고사항	라. 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 사육개시 연월일		
	가.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사육현황	나.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단계별 세부 내역(두수)		
	다. 사육 총 두수		

3. 사육현황 변경 시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되,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3. 도축 목적	2. 도축 의뢰인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4.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 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		
	5. 접수번호 7.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9. 연령(소만 해당) 11. 총수량 13.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5.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8. 성별(소, 종돈만 해당) 10. 생체량 12. 도체중량 14. 이력번호 16. 신청 연월일		
다. 검억계뉴상 도작일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 3. 접수번호(도체순번) 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부분육 구분 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 경매 결과 7. 경매 거래·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이력번호(돼지만 해당) 지육·부분육 중량 중도매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도축 의뢰인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가. 농장명
	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출하 농장정보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돼지정보	가. 출하 두수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 가.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출하순번)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아 아머, 사용되는 표시타벨 등은 취생성 취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이력번호의	규격에 따른다.
표시 방법	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
	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2.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기력번호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 등	나.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친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축업자는 도축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탈	격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1.			
신청인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		
검사(반입)장소	가.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가. 한글명 다. 포장수량	나. 영문명 라. 순무게(kg, t)	
부위	가. 부위명 다. 부위별 무게(kg, t)	나. 부위별 수량	
수입내역	가. 화물관리번호 다. 생산국	나. 선하증권번호(B/L №)	

2. 신청서의 기록·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_		,		
1.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방법	가. 이력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 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 별표의 표시시항 과 규격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입유통식 별표의 부착 방법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4.	수입유통식 별표의 관리	검역본부장은 축산물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2]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1. 거래 신고 내용

항목	내용				
신고인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			
출고(입고)처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영업허가(신고)번호	다.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거래처(양도·양수)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			
거래내역 (양도·양수)	가. 거래일 나. 이력(묶음)번호 다. 제품명(부위명)	라. 수량 마. 무게 바. 도체순번(도체번호)			

- 2. 포장처리 신고 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 해당한다)
- 가.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나. 전화번호
- 다. 소재지
- 라. 포장처리일
- 마. 이력(묶음)번호
- 바. 원료 또는 부위명
- 사. 무게(kg, t)
- 아. 매입・반입처(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 바. 의뢰업체명(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3. 판매 신고 내용(수입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항목	내용
신고인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출고처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판매처(양도)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판매내역(양도)	가. 판매일 나. 이력(묶음)번호 다. 제품명(부위명) 라. 수량 마. 무게

4.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u>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u>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체 또는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바.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 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 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 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용기·포장에 표시되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한다.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이력 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한다.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보관해야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에 따른다	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나. 다만, 식육판매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이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나.

[별표 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축산물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									
	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두	국음번호 구성내역	서를 기록한 후	무음번호를 사용학	할 수 있다.				
	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			
日のおうめ	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묶음번호의	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방법	표시하	여야 한다.							
	라. 식육포	장처리업자 또는 스	육판매업자는 소	의 종류가 같을 때어]만 묶음번호를 구성	할 수 있다.			
	마. 묶음번	호를 구성한 이력번	호는 다시 묶음번	<u> 호로 사용할</u> 수 없다	. 다만, 묶음번호 구석	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	리시스템으로 전산	신고를 하는 돼?	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	j할 수 있다.			
	바. 돼지고	기의 묶음번호 가	공 시 성별, 등급] 별로 묶음번호를 구	'성할 것을 권장한디	7.			
	가. 묶음번:	호를 구성하는 쇠고	·기의 개체는 20r	마리 이하로 한다. 다	만, 여러 마리의 쇠고	1기를 혼합하여			
	포장하	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	0마리 이하로 구성	할 수 있다.				
	나. 묶음번	호를 구성하는 돼	지고기의 이력	번호는 30개 이하로	² 하여야 한다.				
묶음번호의	다. 식육포	장처리업자와 식	육판매업자는 -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3	호서식의 묶음			
관리	번호 -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	i야 한다.					
	라. 영 제4	조제1호에 따른 전	선산신고 대상 스	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소	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묶음번호를 조회	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	서를 전산신고			
	하여야	한다.							
	가. 묶음번호	호는 아래 구성체계	와 같이 L을 포함	한 15자리 문자·숫자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위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	호 구성체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묶음번호의	1) 묶음	고정코드는 영문지	ㅏ'L'을 표기한대	7.					
구성체계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1 0/11/71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띠	l른 전산신고 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					
1	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								
	등	록번호 10자리 쉿	는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	자를 제외한 4자리				
	_	록번호 10자리 ƒ ·다.	는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	자를 제외한 4자리				
	한	다.		마지막 한 자리 숫 복되지 않도록 영업		숫자를 사용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 묶음번호의 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 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 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묶음번호의 안 된다. 관리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 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장코드 영업자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묶음번호의 코드 Α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구성체계 1) 구분코드는 고정값으로 '41'을 표기한다. 2)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4)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여하다.

[별표 15]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 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게시·표시하여야 한다.
 -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 3) 수입신고필증
 - 4)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계산대
 - 2) 출입문 주변
 -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다. 이력번호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기준일 표기) 이내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 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표시 시기 :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2) 표시 문구(예시) :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 2) 설명 문구(예시) :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 4. 그 밖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6]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수 있다
-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 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외의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 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 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한다다

※ 어디의 규의사임	를 될끄 직정		며, []에 <u>는</u>	에당되는	: 大ጣ	∨ #글 입	니다.	=1 =1 =1 =1	۲۵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성명				(2)	주민등록반	호(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반	호)	
신청인 ③ 3	주소(거주지)				4) č	화번호					
⑤ 사육가축의 종류		□ 자가사-		사육 □		사육+ 위탁				추장	
및 사육방식	□ 돼지	□ 자가사-	육 🗌 위택	탁사육 🗆	자가	사육+ 위틱	사육 [] 종돈장		<u>타</u>	
	농장 명칭:										
@ J= J A J J	사육시설 소				-1 =1 -11	_					
⑥ 가축사육시설	관리자 성명			(전화번.	<u>φ</u> :)			
	GPS좌표: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사육개시 연					돼/	zl				
	종류	두수		세부 내	여(드스)		٦				
	소계	7.7	종류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⑦ 사육규모	한 우		일반종	-1-/11		122	0 L	716	702	1171	
	육우		<u> </u>								
	젖 소		멧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1 21 3 1.			_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 같이 ㄲ 표시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4. 사육규모는 ⑦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리수나.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리수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저 /				ല ലി ജിഹ) _ _ _	5장식별번호	- p) bl-=	그 기비	
	7	접 수 처 리 기			<u>4</u> 두 김 처 리 :		<u>.</u> 7		2 못 말급 급 기 관	~ 业十	
신청인		시 니 / (축산물품질	, _			71 원 일평가원)		_	ㅂ /	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소, 종돈의 출생]소, 종돈의 폐사]양도·양수·이동 신고]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는	<u>당란에 ∨</u> 표시	하며, 바탕색이 어누운 난은 신	<u> 1</u> 고인이 2	역시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31-1/12 12 22			7-1 2-12	A))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	업자 또는 팀	a인 등록번호)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u> </u>		전화번호				
	주소			I				
	,			(전화학	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	<i>1</i>)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5항에		
				년]	월 일		
		신	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	l 평가원장	귀하						
71112	범건기원 O	조대취 스 시노 기그				수수료		
구비서류	번성사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mm×297mm	 n(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생·수입·수출 소의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병	번호	접 :	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농장	① 성명 ③ 법인 명칭		② 주민등록번	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공통	경영자 정보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가축 사육	⑤ 농장식별번호⑦ 사육시설 소재⑧ 사육 개시 연월		⑥ 위탁기관명	
	시설 정보	9 관리자 성명 ① 관리자 주소	<u>.</u> E	⑩ 관리자 주민	등록번호
	0.22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11]	① 출생·수입·수출	· 연월일	③ 소의 종류 1. 한우 2. 젖:	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출생 누입	④ 암수 구분 1.		⑤ 부 개체식별	번호
수출 신고			수 거세 프리마틴	① 모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반출·반입) 신고		② 양도자(반출자)	구(반입) 구분 구(반입) 연월일 및 장소 ·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⑧ 개체식별번호 ⑩ 농장식별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페시	· 신고	24 개체식별번호25 폐사 원인27 폐사처리방법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장소:) 	② 폐사일 2. 일반질병 2. 폐기처리(업체	3. 사고 4. 기타 명: , 전화번호:)
「가축	두 및 축신	물 이력관리에 관형	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지	에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리 신고인 대리 신고인 전화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추산업협동조합장 5업협동조합장			
		별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약	<u>간</u>)	귀하	

(뒤쪽)

유의사항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⑮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 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 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 별번호를 적습니다.
-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麞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O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Ø라을 적고, Ø라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O를 표시하며, Ø라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ㅇ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생·수입·수출 종돈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폐사

※ 두	·목의 신 <u>·</u>	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	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	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33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	③ 법인 명칭	<u> </u>					
공	경영자	④ 주소						
통	정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		⑤ 농장식별번호	·					
고	가축	⑥ 사육 소재지						
사	사육	⑦ 사육 개시 연월일						
ठ्टी	시설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주	-민등록번호				
Ū	정보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① 개체식별번호	⑤ 종돈의 종류(1.순종,	2.수입종돈, 3.번식용씨돼지, 4.기타)				
		② 1.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대요크셔(Large Yorkshire), □ 랜드레이스(Landrace),					
÷	출생	이 비가이에게 첨도 청시시(청시비구).	□ 두록(Duroc), [□ 햄프셔(Hampshire), □ 웰시				
3	수입	2. 번식용씨돼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	(Welsh), □ 피어	트레인(Pietrain), 🗌 스포티이드				
	수출	③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Spotted), 🗌 버크셔	(Berkshire) 🗌 재래종				
	구물 신고	쌀 글 ((T B T 글 / C 글 글						
	_	# Ta 또는 T을 된던지(목/F3) ### 암수 1. 암(두)	⑥ 부 개체식별번호					
			① 무 개세ㅋ 들 한 모② 모 개체식별번호					
		구분 2. 수 (두)	W 도 개세극실인도					
		⑱ 양도(반출)・양수(반입) 구분	① 개체식별번호					
양달	E·양수	1. 양도(두) 2. 양수(두)						
이동	·(반입·	② 양도(반입)·양수(반출) 연월일 및 장소	② 농장식별번호					
Ę	바출)	② 양도자(반입자)・양수자(반출자) 성명(상호)						
,	신고	②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					
		② 개체식별번호	26 폐사일					
폐시	나 신고	②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フト・	축 및 축	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종된	든등록기관의 장 귀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양도·양수·이동 돼지 []사육 현황

※ 두	목의 신고	1서 작성 유	의사항을	- 참고하시기	- 바라며, t	- 바탕색이 0	서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기	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역	일		처	리기간 즉시	.]
	농장 경영자	① 성명 ③ 법인	명칭 명칭					② 주민등록 등록번호)	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공 통	정보	④ 주소				(전화번	<u>]</u> কু:	휴대	전화번호:)
신 고		⑤ 농장식 ⑥ 사육 ⑦ 사육	소재지]일						
사 항	가축 사육시	⑧ 관리지	나 성명					⑨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of.	설 정보	⑩ 관리지	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① 농장위		종돈장		AI센터			☐ Ħ	<u></u> 선선문농장
				비육전문농	장 🗆	일괄사육	-농장 [] 기타		
		①계(두)	13				① 세부	-내역(두)		
사육현황 신고		WAI(1)	종류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⑤ 구분:			(f) (o)	동 일자:				
			E·반출			⑩ 이동 두수: 총 두				
양	도・양수	□ 양수	├·반입		모	돈()[웅돈() 🗆	자돈()
	이동				- '	0 - 1		육돈() 도 개기 표기	lnot E.	`
	입·반출) 신고	18 경영지	lui.			사논의 임/ ·장식별번		트 색상, 표시	보양 등.)
	خدي	② 사육지			160 0	0720	<u></u>			
								((전화번호:)
				한 법률」 같이 신고		항 또는	제8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년	월	일
					디	리 신고 (신 고 대리 신고 인 연락처	_		명 또는 인) 명 또는 인)
	<u>축산물품</u>	질평가원]장 귀하							

(뒤쪽)

유의사항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⑰란을 적습니다. ①~⑪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 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수구분 및 ⑮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를 표시합니다. ⑯~ ⑰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씱란을 적습니다. 또한, ®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O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৯만을 적고, Ø만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O를 표시하며, Ø만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뒤쪽)

유의사항

- 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2. 사육현황 신고는 $2 \sim 4$ 한국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 (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 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리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리수
- 사. 자돈 : 2개월령 미만 아. 육성돈 : 2~4개월령 미만
- 자. 비육돈 : 4~6개월령 이상
- 3. 이동신고는 ⑤란에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의 □에 ∨를 표시하고, ⑥~∞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이동일자 : 돼지의 양도(반입)·양수(반출)일자
- 나. 이동 두수 : 양도(반입)·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ㅁ에 V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 다. 경영자명 :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후 경영자 성명
- 라. 농장식별번호 : 이동 전·후 사육지 농장식별번호
- 마. 사육지 주소 : 이동 전·후 사육지 주소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1-141	성명(대표	E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도축 의뢰인	주소		연락처					
	농장명	농장명			성명(주민등록번호)			
출하 농장정보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주소	주소 GPS좌표			연락처			
출하 돼지정보	출하 두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

~ VIUI > TI-	20/1 -0	T-1/105	무포이시기 미디디	л, по то	1 1111 66 686	이 크게 끊田니다	-1. (エコ)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약	법자 또는 법인	· 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연락처		
	,						
검역 시행장							
소이 포모	한글명				영문명		
수입 품목	포장수량		(단위:)	순무게(kg, t)		
부위	부위명						
T-11	수량		(단위:)	순무게(kg, t)		
H	화물관리번호	-					
수입 내역	선하증권(B/I	.)번호					
	생산국						
		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	1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1	니다.						
					년	.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	·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丁川ጣ규	弘吉						없음

유의사항

-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B/L Na)당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뒤쪽)

			(위쪽)
번호	부위명	수량(단위:)	무게(kg, t)

유의사항

-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 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성명(법인명)			대표자				
신고인	생년월일(사업	검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종					
출고처	영업장의 명칭	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입고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	<u>ই</u>		
				1				
2 2 2 2	성명(법인명)			대표자				
거래(판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처	주소							
-1-11/-1 11	거래(판매)일							
거래(판매)	이력번호			제품명(부위명)				
내역	수량(BOX)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유의사항

- 1. (출고·입고)처란은 양도(매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매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0"표를 하고,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판매)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판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 갯수와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뒤쪽)

거래(판매)일(연월일)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유의사항

거래(판매)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E)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u>당란에 V표시</u> 히	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u>-</u>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	업자 또는 법	 인 등록번호)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	번호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 사항 변경을		니에 관한 법률」제16조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형	-에 따라 신고		
10 202				Ļi	<u></u> 월	일 일		
			신고인	Ĩ.				
놋립춘사건	역본부장 =	귀하	で上し		(서명 또는 인)		
орчен	1410	11-1						
						수수료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010	~/OIHLO TI ^^			
				210mm×297mn	N(일만용시 600	J/ M~(새왈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 이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법인명)		대표자							
را سرا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	연락처							
신고인	영업허가(신고)번	ই	-							
	주소									
(\$ - Al-) = l	영업장의 명칭(신	·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출고・입고)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대표자							
-1-11-1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	연락처							
거래처	영업허가(신고)번	্ত্র								
	주소									
	거래일	도축일		7	가공일					
거래내역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 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0"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 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뒤쪼)

							(뒤쪽)
거래일	도축일	가공일	이력	도축	원료 또는	수량	무게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번호	번호	부위명	(BOX, 마리)	(kg, t)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BOX 또는 도체 지육의 경우 마리)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⑤ 매입·반입처			Œ	⑥ 의뢰업체명		
① 포장 처리일	② 이력(묶음) 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 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 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5	기록사항	[]변경			5신고서			
	[]수[일유	통식	별대정	S [†]	기독사		10	[]수	정.	요구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	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	나.		
-> >				-3.3	. 1							-1 1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1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주소							
				(전화병	<u>번</u> 호)			
	및 허가(신고)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	<u>ই</u>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J →1 / 2.	-1\ \1 -1					
		변경(수>	성)사항					
구	분	변경(수정) 전		Ę	<u> </u>			
변경(수정) 시 	ì 구유							
]에 관한 법률」제21조제4 [†] 별대장,[]]수입유통식별다						
~ (L]/	コスコヒミコ	은 기 0 , 단 기 1 11 10 기 2 9	10/-1/					
		. 5	_ +1	년		월 일		
		신	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사 진

 $3cm \times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노란색)

(뒤쪽)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 조사공무원 또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처리기간 20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일

접수번호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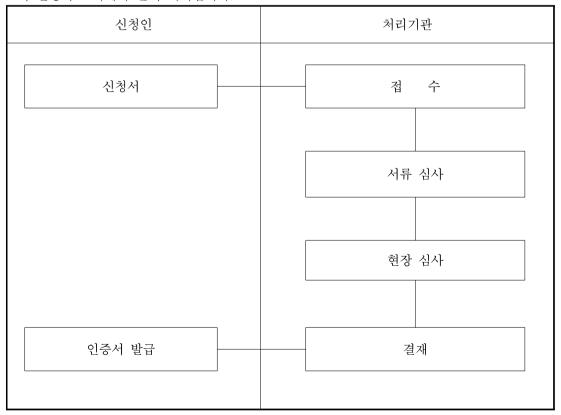
(앞쪽)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	템 구축인	중(갱신, 변 <mark>경</mark>) 신청서		
	인증품목						
	①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	<u>ই</u>			
	③주 소						
	④영업장명칭 (상호)		⑤허가증·신고필증번호				
신	⑥소재지		(전화번호:)				
청	⑦영업의	□ 축산물수입판매업		□ 식육포장처리업			
인	종류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판매	업		
	0 11	□ 축산물유통전문판대	개업				
	⑧판매차단시스템 내역						
	(A) 74 (1 %)	변경 전		변경 후			
	9변경사항						
판매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영업장 지정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W E177	・						
	의 신청 안내서를 참고ㅎ : 해당하는 곳에 ∨표 힙				없 음		
	1. 영업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2. 최근 2개월간의 국내산이력축산물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서 1부(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처리부서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다. 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⑩신청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사	에도 신고하셔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서

- 1. 인증품목:
- 2. 영업장의 명칭(상호):
- 3. 허가 · 신고필증번호:
- 4. 대표자:
- 5. 사업자등록번호:
- 6. 소 재 지:
- 7. 영업의 종류:
- 8. 유효기간:
- 9.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내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위쪽)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m²]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신청자 성명	농장 명칭		사육	두수	
발급 (등록) 연월일	발급 (등록) 번호	농장식별 번호	사육가축 의 종류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GPS좌표)	사육 개시 연월일	소	돼지	비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수령			배부				
연월일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재고량
	시작	끝	, 0	시작	끝		(경영자명)	
전면 이월								
누계(월계)								

유의사항

-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신 <u>ɔ</u>	1 접수			처리 2	결과	_
① 접수일	② 경영자명	③ 개체식별번호	④ 접수자	⑤ 재부착일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⑦ 부착자	⑧ 탈락귀표회수 여부

유의사항

- ①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암수 신청인 또는 가축의 구분 재발급 검사관 농장식별번호 연월일 종류 (돼지는 사유 성명 (소, 돼지) 사업자 또는 마리수) 상호 성명 기존 재발급 법인 등록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유의사항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t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1	2	③ ④ 판매			⑤ 판매처・반출	-처
판매일·반출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kg, t, 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 3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3, 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정 2009.4.2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26호 개정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57호 개정 2011.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31호 개정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53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3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와 제9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파다하는 기법을 말하다.
-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하다.
-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료채취 기관) ① 시료채취는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 축산물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 및 돼지의 경영자등이 사육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 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② 법 제24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
 - 1.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
 -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 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 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 ② 시료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 (前) 단계의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다.
-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보관용·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이력관리 대상가축의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이력번호별로 채취한다.
 -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해당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피채취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 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의 입회 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 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
 -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소지자가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파손·손상·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냉동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
-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해당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 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 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②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 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 3. 시·도 소속 공무워
 -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 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
 - 6. 유전자감식 관련 산·학·연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직무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제9조제2항 관련)

1. 시료(혈액, 조직, 모근 등)에서 DNA 추출

	(1) 시료는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가. 시료채취	(2) 보관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0.5~1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도구 및	(3) 검사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10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채취량	(4) 혈액은 시료채취 용기에 500띠를 채취한다.
	(5) 모근은 약 20가닥 내외로 시료채취봉투에 채취한다.
	(1)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멸균된 1.5ml 튜브와 랙, 70% 알코올, 티슈
	등을 준비한다.
	(2) 보관용 시료는 펀칭기를 이용하여 3회 펀칭 후 1.5ml 튜브에 담는다.
	(3) 검사용 시료는 가위와 핀셋 등을 이용하여 미량 세절 후 1.5ml 튜브에 담는다.
ાં ઝ્રોઇઓ	(4) DNA추출기구(Toyobo kit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나. 조직용해	용해·흡착액을 800μl씩 각 시료가 담긴 튜브에 분주한다.
	(5) 단백질분해효소 K(20mg/ml 농도) 20μl를 각 시료마다 첨가한다.
	(6) 교반(Vortexing)을 하여 시료와 용액을 섞어준다.
	(7) 잘 혼합한 후 시료가 완전히 용해될 때 까지 70℃ 교반기 또는 56℃
	항온수조에 약 12시간 정도 넣는다.
	(1) 조직파쇄기(Precelly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에 시료를
	꽂는다.
	(2) 조직파쇄를 위한 기기의 회전속도는 6,500R.P.M, 파쇄시간은 120초로 한다.
다. 조직파쇄	(3) 조직파쇄기가 종료되면 시료를 원심분리기로 옮기고 상온에서 기기의 회
	전속도 13,2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다.
	(4) 원심분리가 종료되면 뚜껑 없는 새로운 1.5ml 튜브로 상층액을 옮긴다.
	이때 피펫에 하층의 응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1) DNA추출장비(MFX-6100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추출관(Tip), 추출판(Plate), 보관용기(tube) 등을 확인한다.
라. DNA	(2) DNA추출장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외선장비(U.V)를 작동시킨다.
추출	(3) 상층액을 옮긴 1.5ml 튜브를 DNA추출장비에 꽂는다.
	(4) DNA추출장비 프로그램에 맞게 자석 가루와 증류수, 알코올, 세정액 등을
	넣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마. DNA 농도측정

- (1) 추출된 DNA를 교반(Vortexing)한다.
- (2) 농도측정기(Nanodrop Spectrometer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 (3) 증류수를 이용해 영점기준(Blank)을 보정한다.
- (4) 1 비의 DNA 용액(Solution)을 이용해 농도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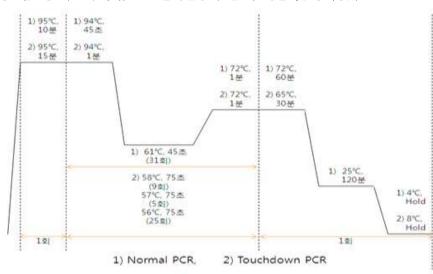
2. 검사 마커의 유전자형분석

[PCR 반응 순서]

- (1) 증폭할 DNA(Template DNA), 시발체(Primer), 완충액(Buffer), 중합재료 (dNTPs), 중합효소(Taq polymerase), MgCl2, 증류수(D.W) 등을 준비한다.
- (2) PCR 튜브를 준비하고 시료가 섞이지 않게 튜브에 표시(Labelling)를 한다.
- (3) 얼음을 준비하고 -20℃에 보관되어 있는 Primer mix(set), Buffer, dNTPs를 얼음위에서 약 20분 이상 녹여서 사용하며 중합효소는 상온에 있을 경우 활성을 잃게 되므로 시약제조 시 -20℃ 냉동고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4) 증폭할 DNA를 PCR 튜브에 1μl(10~50ng)씩 분주한다.
- (5) DNA 샘플수에 맞게 Primer mix(set), Buffer, dNTPs, D.W의 제조시약을 만든다. 이때 실험할 샘플수보다 2개정도 많은 양을 계산하여 제조시약을 만드는데 이는 제조시약을 PCR 튜브에 분주할 때 피펫팅으로 유실되는 양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가. PCR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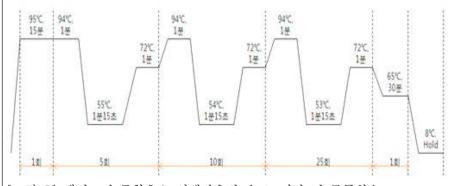
- (6) 제조시약(Mixture)을 다 준비했으면 PCR 튜브에 각 13~14μ씩 분주한 다음 뚜껑을 잘 덮어준다. 잘 덮이지 않으면 PCR 반응 시 높은 온도에 증발될 수도 있다.
- (7) 시약 분주가 끝나면 PCR 기계(ABI 9700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를 작동시키고 프로그램을 입력한다.
- (8) 유전자 증폭 장비의 PCR 반응은 쇠고기는[그림 1], 돼지고기는[그림 2]와 같이 수행한다.
- (9) 입력이 끝난 후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고 샘플 고정 블럭이 95℃로 온도가 올라가면 준비된 시료를 블럭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 (10) PCR 기기 프로그램 작동이 잘 되는지 첫 중합반응(Cycle)이 실행될 때 까지 확인한다.
- (11-1) 쇠고기 시료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Normal PCR 방법 또는 Touchdown PCR 방법을 이용하고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1] 쇠고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

가. PCR 반응

(11-2) 돼지고기 시료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Touchdown 방법을 이용하고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2] 돼지고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

[쇠고기 PCR 반응시약의 제조]

- (1) Primer mix(set), dNTPs, Buffer, Taq Polymerase, D.W를 해당 샘플개수에 맞추어 용량을 결정한다.
- (2) 시약 조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1) Normal PCR	2) Touchdown PCR
Buffer	3μl × X	1.8µl × X
dNTPs	$4\mu l \times X$	$1.2\mu l \times X$
Primer mix(set)	5.5μl × X	8.25μl × X
Taq Polymerase	0.5μ l $(2.5U) \times X$	$0.6\mu l(2.5U) \times X$
DW	$1\mu l \times X$	2.15µl × X
Total	14μl × X	14μl × X

[돼지고기PCR 반응시약의 제조]

- (1) Primer mix(set), dNTPs, Buffer, Taq Polymerase, MgCl2, D.W를 해당 샘플개수에 맞추어 용량을 결정한다.
- (2) 돼지고기 시약 조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Touchdown PCR
Buffer	1.5µl × X
dNTPs	$1.2\mu l \times X$
Primer mix(set)	8.25μl × X
Hot-start Taq Polymerase	$0.4\mu l(2.0\mathrm{U}) imes\mathrm{X}$
MgCl2	$1.1\mu l \times X$
DW	0.55μl × X
Total	13μl × X

가. PCR 반응

[쇠고기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마커명	방향	염기서열	크기
(MARKER)	(Direction)	(Primer Sequences)	(Size(bp))
TGLA227	Forward	CgAATTCCAAATCTgTTAATTTgCT	76~104
I GLAZZ1	Reverse	ACAgACAgAAACTCAATgAAAgCA	(bp)
BM2113	Forward	gCTgCCTTCTACCAAATACCC	$123 \sim 143$
DW12113	Reverse	CTTCCTgAgAgAAgCAACACC	(bp)
TGLA53	Forward	gCTTTCAgAAATAgTTTgCATTCA	$154 \sim 188$
1 GLA33	Reverse	ATCTTCACATgATATTACAgCAgA	(bp)
ETH10	Forward	gTTCAggACTggCCCTgCTAACA	212~224
EIIIIO	Reverse	CCTCCAgCCCACTTTCTCTTCTC	(bp)
SPS115	Forward	AAAgTgACACAACAgCTTCTCCAg	246~260
31 3113	Reverse	AACgCgTgTCCTAgTTTggCTgTg	(bp)
TGLA126	Forward	CTAATTTAgAATgAgAgAggCTTCT	116~122
IGLATZ0	Reverse	TTggTCTCTATTCTCTgAATATTCC	(bp)

[쇠고기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마커명	방향	염기서열	크기
(MARKER)	(Direction)	(Primer Sequences)	(Size(bp))
TGLA122	Forward	CCCTCCTCCAggTAAATCAgC	137~181
IGLA122	Reverse	AATCACATggCAAATAAgTACATAC	(bp)
INRA23	Forward	gAgTAgAgCTACAAgATAAAC	196~222
INKAZO	Reverse	TAACTACAgggTgTTAgATgAACTCA	(bp)
ETH3	Forward	gAACCTgCCTCTCCTgCATTgg	$105 \sim 125$
EIIIO	Reverse	ACTCTgCCTgTggCCAAgTAgg	(bp)
ETH225	Forward	gATCACCTTgCCACTATTTCCT	$141 \sim 159$
E1HZZ3	Reverse	ACATgACAgCCAgCTgCTACT	(bp)
BM1824	Forward	gAgCAAggTgTTTTTCCAATC	178~192
DIVI1024	Reverse	CATTCTCCAACTgCTTCCTTg	(bp)

[돼지고기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가. PCR 반응

(7.5.4.DITED)	(5)	(D) (C)	(3: (1))
(MARKER)	(Direction)	(Primer Sequences)	(Size(bp))
SW936	Forward	TCTggAgCTAgCATAAgTgCC	80~117
	Reverse	gTgCAAgTACACATgCAggg	(bp)
SW951	Forward	TTTCACAACTCTggCACCAg	$125 \sim 133$
SW951	Reverse	gATCgTgCCCAAATggAC	(bp)
SW787	Forward	CTggAgCAggAgAAAgTAAgTTC	150~165
SW101	Reverse	ggACAgTTACAgACAgAAgAAgg	(bp)
S0026	Forward	AACCTTCCCTTCCCAATCAC	92~106
30020	Reverse	CACAgACTgCTTTTTACTCC	(bp)
SW122	Forward	TTgTCTTTTTATTTTgCTTTTgg	110~122
SW122	Reverse	CAAAAAAggCAAAAgATTgACA	(bp)
SW857	Forward	TgAgAggTCAgTTACAgAAgACC	144~160
2W001	Reverse	gATCCTCCTCCAAATCCCAT	(bp)
CW70	Forward	ATCAgAACAgTgCgCCgT	101~115
SW72	Reverse	TTTgAAAATggggTgTTTCC	(bp)
S0155	Forward	TgTTCTCTgTTTCTCCTCTgTTTg	150~166
50155	Reverse	AAAgTggAAAgAgTCAATggCTAT	(bp)
S0225	Forward	gCTAATgCCAgAgAAATgCAgA	170~196
30223	Reverse	CAggTggAAAgAATggAATgAA	(bp)
CMOA	Forward	CTTTgggTggAgTgTgTgC	96~121
SW24	Reverse	ATCCAAATgCTgCAAgCg	(bp)
CWGOO	Forward	TgggTTgAAAgATTTCCCAA	159~180
SW632	Reverse	ggAgTCAgTACTTTggCTTgA	(bp)

[전기영동 순서]

- (1) 삼각플라스크에 Agarose 3.0g과 0.5X T.B.E(Tris-Boric acid-E.D.T.A) Buffer 150ml을 넣어 2% Gel을 제조한다.
- (2) 먼저 삼각플라스크의 무게를 확인한 후, 전자레인지(micro oven)에 약 3분간 돌려 Agarose Gel을 용해시킨다.
- (3) 3분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소실된 양만큼의 0.5X T.B.E Buffer를 채워준 후 다시 30초간 돌려준다.
- (4) 실온에서 천천히 식힌 후, EtBr 7山을 넣은 후 다시 천천히 식힌다.
- (5) 온도가 적당히 떨어지면 Gel 응고용 tank에 붓고 굳힌다.
- (6) PCR product 3 비 + D.W 6 비 + Dye 1 비을 섞는다.
- (7) 각 샘플을 Gel 홈에 조심히 넣는다.맨 처음 홈에는 100bp 표준자(Ladder)를 넣는다.
- (8) 전기를 (-)에서 (+)로 약 40분정도 흘려준다.
- (9) 전기영동이 끝나면 Gel을 꺼내어 이미지 장비에서 증폭 유무를 확인하고 렌즈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촬영 후 저장한다.
- (10)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PCR 산물의 증폭정도를 보고, 희석배율을 결정하여 DNA 분석에 적합하게 희석하다.

나. 전기영동

[전기영동용 T.B.E Buffer 제조]

- (1) PCR 증폭유무를 확인하는 전기영동 Agaraose Gel을 만들기 위해 T.B.E Buffer를 제조한다.
- (2) 보통 10배 농축액으로 제조하여 두고 사용 시 0.5배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가) 1,000ml비커를 준비하며 Buffer 500ml을 제조 시 그 이상의 비커를 준비하여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 비커에 마그네틱 바를 넣는다.
- 다) 비커에 다음의 시약들을 넣는다.

제조시약명	시약명	용량
	Tris	54g
10X T.B.E	Boric acid	27.5g
	E.D.T.A	4.7g

- 라) 3차 증류수 500ml를 비커에 조심히 붓는다. 이때 가루의 시약들은 서로 엉켜 붙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혼합해준다.
- 마) Hot Plate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교반 해주며 비커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호일 등으로 윗부분을 덮어준다.
- 바) 증류수(D.W)에 모든 시약이 용해될 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된다.
- 사) 용해가 완료 되면 500ml시약병에 T.B.E Buffer를 담는다.

	제조시약명	시약명	용량
나. 전기영동	0.5X T.B.E	10X T.B.E	50ml
71. 12/100	0.5X 1.D.E	3차 D.W	950ml
	아) 10X T.B.E Buffer는 (Gel 제조 시 ().5X로 희석히	하여 사용한다.
-	(1) PCR반응이 끝난 시료를	를 표준 사이즈 자와 Formar	nide를 혼합하여 희석한다.
	(2) 혼합된 시료를 95℃에	2분 가열하여 DNA를 변성	시킨 후, 변성 상태를 유지
다. DNA	하기 위하여 얼음에 보	L관한다.	
판독을	(3) DNA 분석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파일명을 입	력하고 분석일자, 분석자명,
위한	시료명, 분석방법 등을	· 입력한다.	
DNA	(4) 분석기의 뚜껑을 열어	남아 있는 Polymer의 역	양을 확인하고 Polymer가
분석기	누출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동요령	(5) 프로그램 입력이 끝나면		·
	· -	ry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고 시료를 분석기에 정확히
	위치하게 하여 작동한	<u> </u>	
	(1) 분석이 끝나면 원본 파		· · ·
		ll품)으로 불러와 아날로그선	
	(2) 표준 사이즈 마커의 유		프트가 없는지 확인한 우
	시료의 마커 사이즈를 (3) 아날로그신호로 확인된		버히쉬서 스키치디 가스크
	컴퓨터 파일로 기록하		번환야역 구시와된 없으도
라. 분석된	(4)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		거사요 시ㄹ이 대리유저자
DNA		"일치", 대립유전자의 값이	
데이터	"불일치"로 판정 한다.		1 2 1 1 1 10 2 0 1 1 1 2
· · · · 판독 및	(5) 분석결과 나타난 대립		않는 경우, 즉 끝이 일정
재분석			가 너무 낮아 백그라운드와
,, _ ,	혼동될 경우, 여러 개의	피크가 보일 경우, 피크기	- 너무 높아 분석이 불가할
	경우 등의 시료는 처음	·부터 재분석 한다.	
	(6) 재분석하는 시료의 Di	NA는 U.V 260nm, 280nm	m에서 DNA의 양과 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 경우 PCR 단계부터 다	시 검사하고 분석을 위한
	DNA의 양과 질이 검	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DNA추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1) 분석결과는 이미지 파	일과 엑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마. 분석결과의	하여 필요할 때 수시5	^근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관련
관리		E 보관·관리하여야한다.	
74	(2) DNA분석결과의 자료!		
	보관하고 그 부본은 품	질이 보증되는 외장형기록	개체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	료채취	확	인서	
시어자	상 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성 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 소					
채취현황	이력(묶음))번호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②식육판매업소 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채취일	시		j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채취사유						
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	시사형		확인 - 활용]하기 위한 =	의거 상기와 같이 이력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다.
채취자	소속 :					
	직 :		성기	경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기	경 :		(서명)
첨부 : 묶음번	호 구성 내	역서 시	P본 1부(묶음번호	의 경	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일련번호	이력(묶음)번호	사업장	채취일	송부일	채	취자
근단건조	17(110)02	71118	게되린	012	소속	성 명
월 계						
누계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이력(묶음)번호	채취일	고기의 종류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기 관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

접수일	도축장	일련 번호	이력(묶음)번호	도축일	송부일	경과일	채취자	폐기일	폐기자	확인자
							210 >/ 20			

[별지 제5호서식]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이력(묶음)번호	사업장	채취일	채취자	입회자	폐기일	폐기자	확인자

[별지 제6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

일련번호	접수일	개체식별번호	사업장	채취일	채취자	폐기일	폐기자	확인자
					040 1400	7/01HI 0 FI		

[별지 제7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이력(묶음)번호	신청일	신청기관	폐기일	폐기자	확인자

[별지 제8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신자 : (경 유)

제 목: DNA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10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력(묶음)번호	신청일	신청기관	판정결과
(신청번호)	省十号	어역(유금/인호	건경설	선생기단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년도 분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12조에 의거 DNA동일 성검사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별	검사구분	DNA동일성 검사		검사 결과			ъј – г
		계획 건수	실적 건수	계	일치	불일치	비고

기 관 **장** (직인)



5.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즁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 3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1, 2014.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제정 2012.12.2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2-173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5호 개정 2014.12.1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1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4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이하 "인증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쇠고기 및 같은 호 나목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 2. "위해축산물"이란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 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란 법 제1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정보 전부를 자기 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 한 것을 말하며, "수입유통식별대장"이란 법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정보 전부를 자기 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기록·관리한 것을 말한다.
- 4. "이력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하다.
- 5.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인증 영업장이 위해축산물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대상축산물 위해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신청대상 영업장)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장은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제4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위해축산물을 차단 및 확인할 수 있는 단말장치(화면 출력 혹은 인쇄물 출력 등)를 갖추어야 한다.
 - 2. 위해축산물로 판명이 될 경우 판매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제5조(신청 방법)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장(이하 "신청 영업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 제6조(인중심사 등) ① 영업장으로부터 신청 서류 등을 접수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 평가원장은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처리 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 1. 제4조의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 확인 가능 여부
 - 2.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에 대해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하지 여부
 - 3. 규칙 제28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 영업장이 제출한 거래내역 실적서류와 실제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
 - 4.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및 규칙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항에 따른 거래신고 기한 준수 여부
 - 5. 법 제18조 제1항·제2항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 여부
 - 6.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축산물 이력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②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중심사 결과) ①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인증 영업장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신청 영업장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영업장에게 보완 완료를 통보 받은 경우 재심사를 통하여 보완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재심사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판매차단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기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된 위해축산물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유통식 별대장에 기록된 위해축산물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인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1. 인증신청서 접수
 - 2. 거래내역 신고 확인
 - 3. 인증서 교부
 - 4. 인증 영업장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 확인
 - 5. 인증 영업장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 제9조(갱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증 영업장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검역 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당해 영업장의 최초 인증 심사와 동일하게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갱신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영업장 소재지
 - 2. 영업장 명칭(상호)
 - 3. 대표자 변경

- 4.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변경
- ② 인증 영업장으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변경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시스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인증 영업장의 표시·광고) 인증 영업장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지정받은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표시·광고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 영업장의 운영·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 영업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인증 영업장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 신고하고 있는 지역부 및 허위 신고 여부 확인·관리
 - 2.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적정 사용 여부 및 미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무단 사용 여부 확인·관리
 - 3. 인증 영업장에서 위해축산물 차단시스템 운영 장비 고장 및 연계 장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즉시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 4.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권한의 위임) ①검역본부장은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 제5조에 따른 인증 신청 접수
 -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
 - 3. 제7조에 따른 인증서 발급, 보완요구 및 재심사
 - 4.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 관리
 - 5. 제9조에 따른 인증 갱신
 - 6. 제10조에 따른 변경 신청
 - 7. 제12조에 따른 인증 영업장 운영·관리

부 칙(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후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5.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미 이 고시 시행이전에 인증을 받은 업소의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 기간까지 이전 고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1】

×	0대이 시청서	작성 유의시	사하다 한 우선.	I기 HI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나은	시청인이	전지 않습니다	ŀ

접수번호	호 접수	일	발급일		처리	기간	20일		
\equiv				<u> </u>	/=			(앞 쪽)	
	위애숙산물	판매차단시스	템 구축	인슝	(갱신,	면경)	신정서		
	①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	호 호				
	③주 소								
	④영업장		⑤허가증 · 신고필						
	명칭(상호)		증번호						
신 청	⑥소재지		(전화번호 :)		
(전 인	⑦영업의 종류	□ 쇠고기수입업			□ 식육도	도장처리(업		
_ ·	U 8 H 7 8 H	□ 식육판매업			□ 식육투	^브 산물판'	개업		
	⑧판매차단시 스템 내역								
	(의 건 기 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항								
위히	H축산물 판매차딘	관리에 관한 법률」 -시스템 구축 인증 여 경, □ 갱신	영업장 지정	으	시행규	칙 28조기	제3항에 따리	}	
100	ㅁ 건비, ㅁ 현								
		년 윌]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전화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뒤쪽의 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E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없음								
. –	1. 영업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2. 최근 2개월간의 국내산이력축산물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서								
1	1부(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010 \ 007 (01Ht0Tl 00/Tlist0Tl)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청안내 (뒤 쪽)

<u> 本日 6 日刊</u> (刊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축산물폼질평가원 지원	처리부서	축산물위생검역과 이력관리팀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7. 3. ⑩신청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인증서 교부	결재

【별지 2】

(앞 쪽)

제 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서

- 1. 인증품목 :
- 2. 영업장의 명칭(상호):
- 3. 허가 · 신고필증번호:
- 4. 대표자 :
- 5. 사업자등록번호:
- 6. 소 재 지 :
- 7. 영업의 종류 :
- 8. 유효기간 :
- 9.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내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뒤 쪽)

(뒤 속 변경 및 처분사항									
	면성 ㅊ 시판사병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별지 3】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영업 장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허가증 신고필증번호	인증 번호	인증 품목	인증 지정일	인증 만료일	신청 종류	비고

[별표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1. 영업 현황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	신청 품목	허가·신고필증 번호
청 현	대표자	연락처
황	소재지	
	신청 종류	신규(), 갱신(), 변경()
	구축시스템 내역	

2. 세부 점검기준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 ×)	비고
	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 일자 별로 구분하여 기록·보관 및 거래 고하고 있는가		
	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용되면서 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모	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및 확인이 능한가		
•	육의 판매표지판이나 비닐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적합하게 표시 여 판매하고 있는가		
	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는가		
	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반사항이 있는가		

3. 점검 결과

고 최 때 기	적합	부적합	윈조거귀	적 합()		
종 합 평 가	개	개	최종결과	부적합()		
지적 사항						
① 각 항목은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한다. ② 평가 항목 중 어느 한 개라도 부적합이 없어야 함.						
소속 : 소속 :		년 월 위(직급) : 위(직급) :	성명 :			

[별표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인증 표지(제11조 관련)

1. 표시도형



【 인즁품목 】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가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인증"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안에는 인증 품목(국내산쇠고기 수입산쇠고기)을 기입한다.
- 바.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본 내용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_**김준걸** 주무관_권병운 (TEL. 044)201-2362, 2363)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본부장_최규진 팀장_정연복 과장_이상희 (TEL 044)410-7091, 7093)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 발행인 : 백 종 호

○ 발행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인 쇄: 비전기획(02)504-1555

○ 발행일 : 2016년 8월